

---

#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02-2100-2456, 244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서울청사 405호



#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1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2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3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현황 .....	3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5
III. 세부 추진계획 .....	10
전략목표 I .....	10
전략목표 II .....	58
전략목표 III .....	111
IV. 협업과제 .....	161
V. 환류 등 관련계획 .....	181
1. 이행상황 점검 .....	18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184
<b>【붙임】</b>	
1-1. 성과지표 현황 .....	186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	194



## 1. 그간의 정책성과

##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 (데이터 혁신기반조성)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마련(23.7),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수립(23.8),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 허용(23.12) 등

\* 개인정보 인심구역 시범운영권(국립암센터 통계청) 지정, 활용지원센터 확대(22년3개→23년5개) 등

\*\* AI프라이버시팀 신설 AI 단계(기획개발)데이터 수집·학습서비스별 데이터 처리 기준 원칙 제시 등

-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 전송요구권 신설(23.3), 표준화 대상 확대\*(23.7), 범정부 추진단 출범(23.7), 로드맵 수립(23.8), 민·관 협의체 출범(23.11.) 등

\* (22년) 교육, 교통, 여가, 유통, 정보통신 + (23년) 고용노동, 부동산, 에너지, 보건 의료, 복지

##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

- (일상생활 불안 해소)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제 시범사업(23.3), 지우개 서비스(23.4), 민관협력 자율규제 확산\* 등

\* (22년) 오픈마켓, 셀러툴, 모빌리티 → (23년) 주문배달, 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 접수

- (공공개인정보 관리 강화) 고의 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23.1.), 보호수준 평가제 신설(23.3.),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계획\* 수립(23.4.) 등

\*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운영 등 강화된 안전조치 부과

## □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주도

- (국제규범 논의 확대)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23.6.), UN AI 자문기구 논의 참여(23.10.~),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유치(23.10.) 등

\* 영국·독일·일본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EU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대표자 등 참석

##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비전

#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 3대 정책 방향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 6대 핵심 추진과제

- 1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 2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 3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 4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 5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 6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 II

#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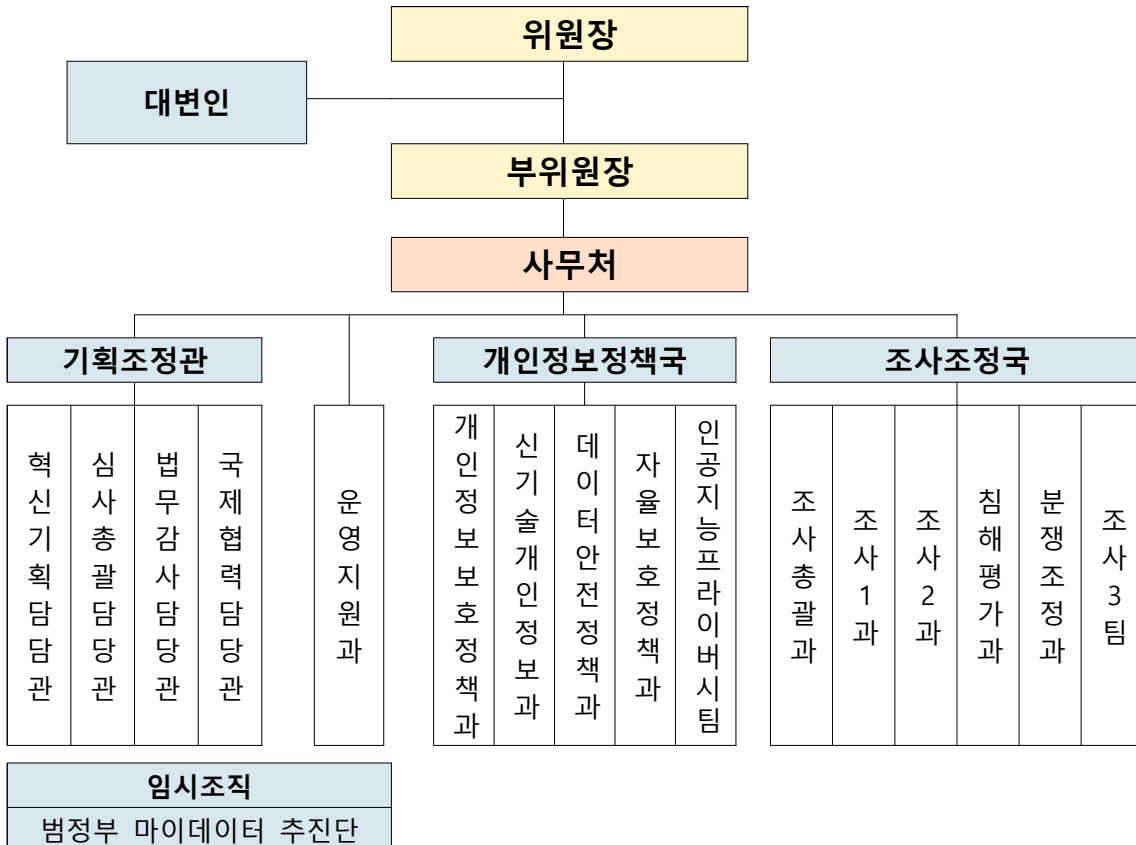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반 현황

### (1) 조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전체 위원 9명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상임위원 2인)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정무직 공무원)
  - (비상임위원 7인) 위원장 제청 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여2, 야3)으로 대통령이 위촉

구분	위원 현황
위원장 제청(2명)	김진환 변호사(웨일앤센),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여당 추천(2명)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욱 변호사(주원)
야당 추천(3명)	박상희 연구위원(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윤영미 전문위원(녹색소비자연대) 이문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사무처) 위원장, 부위원장, 1처 4국(관) 16과(팀)



## (2) 인원

※ '24. 3. 6. 기준

총정원	장관(급)	차관(급)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타
174	1	1	5	3	12	12	64	72	4

##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570	654	1,020	1,028	1,103
(전년대비증가율, %)		(14.7)	(56.0)	(0.8)	(7.3)
○ 총계	570	654	1,020	1,028	1,103
(전년대비증가율, %)		(14.7)	(56.0)	(0.8)	(7.3)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135	145	156	167	178
(전년대비증가율, %)		(7.8)	(7.0)	(7.0)	(7.0)
○ 기본경비	20	23	24	24	25
(전년대비증가율, %)		(12.9)	(3.0)	(3.0)	(3.0)
○ 주요사업비	414	485	841	837	900
(전년대비증가율, %)		(17.1)	(73.2)	(△0.4)	(7.5)
□ 예산					
○ (총)지출	570	654	1,020	1,028	1,103
(전년대비증가율, %)		(14.7)	(56.0)	(0.8)	(7.3)
○ 총계	570	654	1,020	1,028	1,103
(전년대비증가율, %)		(14.7)	(56.0)	(0.8)	(7.3)
【 일반회계 】					
○ (총)지출	570	654	1,020	1,028	1,103
(전년대비증가율, %)		(14.7)	(56.0)	(0.8)	(7.3)
○ 총계	570	654	1,020	1,028	1,103
(전년대비증가율, %)		(14.7)	(56.0)	(0.8)	(7.3)

##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수준을 반영

- (임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전 및 전략) 정책비전을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3대 전략목표를 추진
  - 전략목표 I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전략목표 II :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전략목표 III :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

#### □ 국정과제 및 연두업무계획과의 연계

-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4년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선정
  - 국정과제 등 범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하고 2024년 업무계획의 내용을 연계·반영

## □ '24년도 업무 추진여건

### ○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데이터 활용 필요성 확대

- 데이터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등 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견인하는 데이터 경제\* 심화

\*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 : '22년 25조원 → '23년 28조원 → '28년 51조원(추정)('23. KDATA)

-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초개인화가 확산되고, 영상·합성데이터 등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시장\* 급성장

\* 국내 학습데이터 생성 시장 규모 : '22년 3,777억원 → '23년 4,661억원 → '24년 5,752억원(추정)('23. KDATA)

### ○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대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공공 민간의 데이터 수집·활용 및 데이터 융합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유출 등 피해 발생 지속

\* 국내 데이터센터(상업용) 개수 : '10년 21개 → '23년 40개 → '27년 74개(추정)('23.6. KDCEA)

- 눈속임 설계(Dark Pattern), 프로파일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과 초개인화를 추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증대

### ○ 프라이버시 규범의 전세계적 확산과 데이터 경제 패권 경쟁 가속화

- 주요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추세

\* (미국) 12개 주(州) 개인정보보호법 제정('24.1. 기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22년)  
(일본)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쿠키 등) 제공 시 동의 의무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2년 시행)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16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제정('21년)

- 원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내 데이터 단일시장 형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디지털 주도권 경쟁 심화

\*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최종 적정성 결정 채택('23년) \*\* EU 데이터법 집행안 합의('23년)

##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b>임무</b>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		
<b>비전</b>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시대		
<b>전략목표 I</b>	<b>전략목표 II</b>	<b>전략목표 III</b>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적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I-1	성과목표 II-1	성과목표 III-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	
성과목표 I-2	성과목표 II-2	성과목표 III-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 I-3	성과목표 II-3	성과목표 III-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성과목표 I-4	성과목표 II-4	성과목표 III-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I-5	성과목표 II-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성과목표 II-6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		

###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5	18	35	68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b>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b>		
<b>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b>		
	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국정 11-4, 업무 1-3
	②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4-2
<b>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b>		
	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활용 지원	국정 11-4, 업무 1-2, 4-1, 5-1, 5-2
	②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	국정 11-4, 업무 4-1, 5-2
<b>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b>		
	①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강화	국정 11-4, 업무 5-1, 5-3
	②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1-2, 5-1
	③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국정 11-3, 업무 2-1, 2-2
<b>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b>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국정 11-4, 업무 3-3
	② 민간 자율보호 역량 강화	국정 11-4, 업무 4-1, 4-2, 5-3
<b>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b>		
	① AI·데이터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혁신지원제도 활용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1-1, 1-3
	② AI 국제규범 논의 선도 및 국내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업무 6-1
<b>II.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b>		
<b>1.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b>		
	①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기반 강화	국정 11-4, 업무 3-2
	②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3-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b>2.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b>		
	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처분	국정 11-4, 업무 3-1
	②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준비	국정 11-4, 업무 3-1
<b>3.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b>		
	①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대응	국정 11-4, 업무 3-1
	② 주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국정 11-4, 업무 3-1
<b>4.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b>		
	① 국제·산업 등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개선	국정 11-4, 업무 3-3
	② 침해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 입법지원	국정 11-4
<b>5.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b>		
	①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이용 지속 확대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4-3
	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국정 11-4, 업무 4-3
<b>6.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b>		
	①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 조성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1-1, 3-1
	② 온라인플랫폼의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	국정 11-4, 업무 3-1
<b>Ⅲ.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b>		
<b>1.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b>		
	①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기능 강화	
	②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의 차질없는 이행	국정 11-3, 11-4
	③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④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b>2.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b>		
	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 지원	
	②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강화	
	③ 함께 일하고 싶은, 일 잘하는 위원회 조직 문화 구현	
	④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b>3.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언론 및 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체계적 소통 강화	
	② 정책수요자 공감 유도·협업형 디지털 소통 강화	
<b>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b>		
	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	국정 11-4, 업무 6-1, 6-3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	국정 11-4, 업무 6-2

전략목표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기본방향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성과목표 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 성과목표 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
- 성과목표 4: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

◇ 추진배경

-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이에 걸맞은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화 요구 증대
- 불합리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
- 신기술·서비스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개선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 증대
-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보호수준을 고도화하고 민간 자율보호역량 강화 필요
- AI·신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개인정보 정책방향 재편 필요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정보주체 권리강화,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 일관성 있는 법체계 유지 및 법 적용 관계에 대한 수범자 혼란 방지,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통한 보호 체계 확립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6	11	2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b>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b>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달성률
<b>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b>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체계 정합성 제고
	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①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개정 노력 ②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 ③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노력
	②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① 이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③ 입법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b>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b>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보호·활용체계 구축
	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활용 지원	①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 ②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제도개선
	②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	① 인터넷망 분리 개선방안 도출 및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개정 ② 개인정보 수집 기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
<b>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b>		① 가명정보 활용체계 혁신 ②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조성
	①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 체계 강화	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② 가명정보 교육과정 및 컨설팅 운영
	②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합성데이터 생성 및 참조모델 공개 ②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③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① 전 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마련 ② 국민 기업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발굴 및 마이데이터 표준화 개발 추진
<b>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b>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반 마련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기획운영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
	② 민간 자율보호 역량 강화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운영 ② 자율규제 활성화 노력 ③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교육 및 문화확산
<b>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b>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기준 마련
	① AI·데이터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혁신지원제도 활용	① AI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샌드박스, 법령해석 실적 ②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실적
	② AI 국제규범 논의 선도 및 국내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① AI 규범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 노력도

(1)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 및 빈틈없는 보호 체계 구축

- 인공지능(AI)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및 규제 개선
-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추진
- 아동·청소년 보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실질화, 법령 간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정합성 확보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 산업적 활용 수요가 높은 개인영상정보 규율체계 마련, 온라인 맞춤형 광고 및 생체정보 보호·활용 제도개선 등 안전한 활용 지원
- 개인정보보호 기술혁신 중·장기 인프라 조성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발굴·개발 지원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가명정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신속한 개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성과 창출을 통해 제도 효용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 지속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라인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마련,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추진
- 마이데이터 표준화·플랫폼 구축 등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 공공과 민간 양 측면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수준 고도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및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역량 강화
-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문화 확산 및 자율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인증제도 운영, 정보주체 및 처리자 교육을 통한 보호역량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 민·관 공동 설계

- AI·신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개인정보 정책방향 재편
  - AI·데이터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 AI의 안전한 개발·활용을 위한 혁신지원제도(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샌드박스) 활용
  - AI 국제규범 논의 선도 및 국내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달성률(%)	-	-	100	100	100	100%	기술발전과 함께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 발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24~'26년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상 제도개선 과제를 모두 이행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자 목표치를 매년 100%로 설정	○ 당해연도 법·제도 개선 건수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법·제도 개선 과제 수('24년 17건) × 100%	공문 등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 계획

#### □ 외부환경 분석

-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패러다임 전환 중
  - 디지털 데이터의 75%(MIT Technology Review) 내지 70%(IDC)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있어 안전한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
- 한편,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약화 우려도 증대

#### □ 갈등 요인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23.3월)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 규제 합리화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지속
  -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정비 등
- 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적 기대는 높아진 반면, 법·제도의 제약, 인력 여건 등으로 정책 총괄기구로서 역할에 한계
- 가명정보 활용의 효용성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이해도 및 사회적 공감대 부족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제약
- 전분야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 제도의 복잡성만큼 관계부처,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제도 수립 및 시행 시 다양한 갈등 촉발 가능

#### □ 갈등 관리 방안

-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 데이터 경제의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등
- 데이터 보유기관, 민간기업,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고, 가명정보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홍보 강화
- 표준조례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제공 등 기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
- 범정부 협의회,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세부기준 마련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I-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 (1) 주요 내용

#### □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공포) 후속조치 등 변화하는 개인 정보 환경에 대응하여 법령, 가이드라인 등의 추가 정비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 \*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사례 분석, 위수탁 개선사항 분석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성과 및 계획 수립 총괄 등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 방향의 일관성 확보

#### □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 및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지원
- AI 등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 법령 입안 단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검토 원칙·절차 수립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체계 정합성 제고 (100%)	신규	100%	100%	100%	기술발전과 함께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 발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고도화 위해 관련 법령 등 정합성 검토 목표를 28건으로 전년 21건 대비 33% 확대	○ 정합성 검토수 / 목표 검토수(28건) * 100%	공문 등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분석

- 데이터 가치 증가로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안전한 활용으로 전환
  - 개인은 기존 소극적 권리에서 나아가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는 적극적 권리의 행사에 높은 관심

#### □ 갈등 요인

-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로 작용하면서 기업은 이를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 개발 등 경제적 활동을 하는 반면,
  - 개인은 최초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후의 유통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데이터 활용의 혜택에서 소외

#### □ 갈등 관리 방안

- ‘정보주체가 주도’ 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1]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I-1-①)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 3. 14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가이드라인 정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의 추가적 개선 필요
-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제도(동의 방법, 위·수탁 등)의 개선 요구
-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소통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변화하는 개인정보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월) 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세부 개념·범위, CPO 자격 요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도 등 추가 제도개선 사항 검토
  - 내용의 적절성, 실효성 고려하여 소관 가이드라인·안내서의 법 개정사항 반영, 사례 현행화, 통합·폐지 등 추진
- 새로운 기술·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기준 정비
  - 동의 원칙 적용기준, 계약의 체결·이행 및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사례, 위·수탁 개선사항 등 연구·분석
  -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
- 개인정보 관련 범부처 협력·소통 채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강화
  - 시·도 및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 개정

- 2023년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주요정책 및 성과,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별 주요 실적 등 수록한 연차보고서 제작
- 각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202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안내서 발간	3월	
	대내외 「개인정보 보호법」 추가 개정 수요조사	3월	
2/4분기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 정책연구 착수	4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과제 수립	5월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부	6월	
3/4분기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7월	
	2024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8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 개정	9월	
4/4분기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보고	11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내서 일괄 정비 완료	11월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	12월	
	202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 일반 국민, 신기술 및 신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이해관계집단 : 개인정보처리자, 산·학·법조계 및 시민단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대내외 「개인정보 보호법」 추가 개정 수요조사	3월
회의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7월

□ 기대효과

- 정보주체 권리강화,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통하여 정보주체가 안심하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31 (91)	29 (97)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300)	일반회계		31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개정 노력(%) (50%)	100%	100%	100%	100%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의 후속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변화를 반영하여 소관 가이드라인·안내서 정비*를 목표로 설정  * 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안내서 등 55종 일괄 검토 중이며, 연내 15종 이상 정비 및 관련 설명회 2회 이상 개최 목표	○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선 - 보호법 개정 대내외 수요조사(30%) - 보호법 개정 추진과제 수립(40%) ○ 가이드라인 등 정비 - 개정 건수 / 목표건수(15종) × 20% - 제·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수 / 목표횟수(2회) × 10%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 (20%)	산규	산규	100%	100%	플랫폼·AI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 부합하는 동의 방식 마련 등 개인정보 처리 세부 기준 정비를 목표로 설정	○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 -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50%) -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 도출(50%)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노력(%) (30%)	산규	100%	100%	100%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공고화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 개정, 향후 3년의 개인정보 정책 추진계획 수립,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성과 등을 수록한 연차보고서 제작,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계획 점검을 목표로 설정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공고화 - 연차보고서 제작(30%) -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 개정(30%) - 시행계획 수립(40%)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②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I-1-②)

### □ 추진배경 (목적)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통합적 보호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채용·복지수급자 선정 등 분야에서 AI 등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반 법령에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의 검토기준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권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잇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 ※ (기존) 24세 이하 누구나, 18세 미만 시절 게재한 자기게시물
    - (확대) 30세 미만 누구나, 19세 미만 시절 게재한 자기게시물
  -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지우개 서비스 맞춤형 홍보 추진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시행령 마련(영 제44조의2~제44조의4 신설)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안내서 마련하여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
- 타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수립
  -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행 법령 제·개정 절차 및 입법심사 관련 원칙 분석,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업무 운영·심사기준(안)' 마련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우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1월	
	자동화된 결정 산업계 의견 수렴	2월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및 안내서 발간	3월	
2/4분기	입법 시 개인정보 규제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	4월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6월	
3/4분기	개인정보 규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7월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에 관한 고시 제정	9월	
4/4분기	입법 시 개인정보 규제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11월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업무 운영·심사기준안 마련	12월	
	'24년도 지우개 서비스 결과보고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 일반 국민, 법령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업무 담당자
- 이해관계집단 :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자동화된 결정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산·학·법조계 및 시민단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자동화된 결정 산업계 의견 수렴	2월
회의	개인정보 규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7월
회의	아동·청소년 법제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 청취	8월

###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AI 등 영역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 통제권의 실질적인 행사 지원
- 입법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정합성 강화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3	'24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I-1-정보화②)				
①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31 (91)	29 (97)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300)	일반회계		31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 (30%)	-	100%	100%	100%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단계적 대책 마련 방안을 목표로 설정  '23년도 지우개서비스 처리 건수가 10,813건임을 고려하여 금년도 목표치를 약 25% 상향한 13,500건 처리 및 연말 기준 처리율 90% 이상 달성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강화</li> <li>-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20%)*</li> <li>- 아동·청소년 개인보호 제도개선 계획 수립(50%)</li> </ul> <p>* 24세 이하 누구나, 18세 미만 시절 게재한 자기계시물 → 30세 미만 누구나, 19세 미만 시절 게재한 자기계시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성과(30%)</li> <li>- 실제 처리건수 / 목표건수(13,500) × 25%</li> <li>- 연말 기준 처리율 90% 이상 달성 여부(5%)</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40%)	-	-	신규	100%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시행령 마련 및 고시 제정, 안내서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대응체계 명확화를 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장 방안 마련</li> <li>- 시행령 개정(40%)</li> <li>- 자동화된 결정 안내서 공개(30%)</li> <li>- 자동화된 결정 고시 제정(30%)</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입법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30%)	-	-	신규	100%	입법과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합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심사기준안 마련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과정의 개인정보 정합성 제고</li> <li>- 법률 자문 및 의견 청취(30%)</li> <li>- 연구용역 결과도출(30%)</li> <li>-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 업무 운영·심사기준(안) 마련(40%)</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성과목표 1-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 (1) 주요 내용

-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활용 지원
  - 생체정보, 행태정보, 영상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처리기준 및 제도개선 등 마련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및 표준 개발, 개인정보 우수기술 보유 기업 지원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
  - 드론, 자율주행차 등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이동형 영상기기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 마련 등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제도 개선
-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
  - 신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에 적합한 개인정보 안전조치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안전성 확보조치 내재화 지원
  -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수집·기기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 중심설계 시범사업 계속 운영·보완 및 법적 인증을 위한 방안 마련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 구축(100%)	-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합리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처리율 - 기한 내 95% 처리 목표</li> <li>○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 개인정보 R&amp;D 사업 단계평가 및 연차점검 실시(1회) 및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술 지원(3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샌드박스 처리율(50%) : (실적/목표)×100%</li> <li>○ 개인정보보호 기술 인프라 구축(50%): 실적/목표×100%</li> </ul>	공문, 보고서, 보도 자료, 실적자료 등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 심화 시대 도래로 핵심 데이터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 정보주체의 디지털 시민의식 및 개인정보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 요구 증가
- 국가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데이터 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확대

#### □ 갈등요인

- 신기술 및 신산업 발전에 따라 산업계 등의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져 개인정보 유·노출, 오남용 등 침해 가능성 증대
- 신기술·신서비스의 급격한 발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즉각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 □ 갈등관리계획

-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산업계, 국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보호·활용 기준 마련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활용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인프라 조성 강화
-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하에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안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및 신산업 활성화 지원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활용 지원(1-2-①)

#### □ 추진배경(목적)

-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체인식 등 신산업 육성 및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원칙 마련
- AI·빅데이터 등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인프라 구축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앱·웹상에서 자동 수집·처리되는 행태정보에 대한 투명성·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온라인 행태정보 민·관 협의체 운영 및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 시행을 통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용관계의 복잡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CSP)와 이용자 간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 논란 지속
    - ※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위·수탁 관계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AI 학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활용을 위한 기준·절차·방법, 권고사항, 실제 활용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발
- 생체인식,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합리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공공·민간의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조건 및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영상정보 법안 국회 제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촬영사실 표시방법 표준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와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인프라 구축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상 주요 핵심기술 및 신산업 분야 민감 개인정보(생체, 영상 등)의 안전한 활용 기술 등 개발
  - 핵심분야별(AI·자율주행·블록체인·메타버스 등)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등 개인정보 표준 생태계 조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 개최	1~2월	
	· '24년 R&D 사업 과제별 협약 추진	1~3월	
2/4분기	·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구성	4월	
	·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 연구용역 설계 및 착수	4월	
	· 생체인식정보의 합리적 규율체계(안) 마련	6월	
3/4분기	· R&D 사업 현장컨설팅 추진	7~8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9월	
	· 개인정보 R&D 기술 성과발표회 개최	9~10월	
4/4분기	· 클라우드 내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12월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안) 마련 및 개정	12월	
	·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 개인정보 기술포럼 성과보고회 개최	12월	
	· '24년 R&D 사업 연구과제 단계평가 실시	12월	
	· 개인영상정보 법안 국회 제출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정보주체)
- 이해관계집단 :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주체 및 서비스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단체 등)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협의체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3월~11월
의견수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문가·산업계 의견 수렴	’24.6월
회의	·R&D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과제담당자 대상 현장컨설팅 실시	’24.8~9월
간담회	·클라우드 관련 산업계 및 법률전문가 제도개선 의견 수렴	’24.9월
간담회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 및 성과보고회)	’24.12월

□ 기대효과

-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활용 기준마련 등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촉진 및 기술 생태계 조성, 관련 신산업 육성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3	’24
① 개인정보보호연구(1033)	R&D	75 (75)	71 (71)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301)		60	59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303)		15	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신규	신규	신규	100%	맞춤형 광고, 생체정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목표로 설정	○ 생체인식정보 합리적 규율 체계(안) 마련 (100%)	목표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 및 공문서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제도개선	신규	신규	신규	100%	사회 전 분야에서 다양한 이동형 영상기기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기술·법제 환경 변화를 고려한 개인 권리보호 대책 마련을 목표로 설정	○ 개인영상정보 법안 국회 제출 (50%) ○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마련(50%)	목표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 및 공문서

## ②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1-2-②)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 처리 일상화, 신기술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증대,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강화 필요
-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의 개인정보 인증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터넷망 분리 개선방안 도출 및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개정
  -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변화(클라우드 및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라 현재의 인터넷망 보안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 공공부문 망분리 제도개선(국정원 주관) 중으로 진행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망 분리 적용대상 및 범위 등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공포)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시행령 및 관련 고시 통합·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 ※ 공공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반영 등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가칭)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시범사업 운영 계속 및 시범인증 제품군 확대\*\*
    - \* Privacy by Design :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
    - \*\* (23년) 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 (24년)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 청소기 등
  - 개인정보 처리 기능·특성에 따라 해당되는 인증항목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가칭)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의 인증항목 개선
-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발굴 및 지원
  - 국민생활에 유용한 이슈해결형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및 우수 기술 제품화 등 개발 지원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계획 수립	3월	
2/4분기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 및 선정	5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시범운영 실시	6월	
3/4분기	· 클라우드 관련 산업계 및 법률전문가 간담회 개최	9월	
	· 인터넷망 망분리 연구반 운영	9월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시상식 개최	9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해설서 개정	9월	
4/4분기	· 인터넷망 망분리 연구반 운영	10월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인증항목 개선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정보주체)
- 이해관계집단 : 개인정보처리자 및 디지털 수집기기 제조사 등

구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 PbD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	'24.7월
현장방문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밋업데이 개최	'24.9월

#### □ 기대효과

-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을 통해 정보주체 권리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3	'24
개인정보보호강화(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15 (15)	9.6
	■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304)		15	9.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인터넷망 분리 개선방안 도출 및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개정	신규	신규	신규	100%	인터넷망 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인정보 침해위험 대응을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를 목표치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망 분리 제도개선 방안 도출 (50%)</li> <li>○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발간(50%)</li> </ul>	목표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 및 공문서
개인정보 수집 기기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규	신규	신규	100%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수집·기기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 중심 설계 시범사업 실시 및 국내·외 인증제도를 반영한 인증기준 항목 개선을 목표치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세부 내용 보완 및 인증 절차서 마련 등 PbD 인증 항목 개선 (100%)</li> </ul>	목표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 및 공문서

(1) 주요 내용

□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가명정보 활용체계 혁신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선진화
-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운영
- 가명정보 활용 역량 및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소재 기업·학교에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
- 데이터 활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명정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도사례 발굴·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활용 저변 확대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마련

-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 국민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세부기준 마련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이종분야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 표준화 및 실증사업 추진
-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국민체감도와 국가적 파급력이 큰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지원 추진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정보주체와 제공자·수신자 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가명정보 활용체계 혁신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대 위한 선도사례 발굴(5건)</li> <li>○ 제도 개선(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개정)(2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율(50%) :정상추진/목표(5건) ×100%</li> <li>○ 제도 개선(50%) :실적/목표(2건)×100%</li> </ul>	공문서, 보고서, 보도자료, 행사계획 등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조성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 제공자·수신자 등 마이데이터 참여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송지원 플랫폼 1차 구축완료(100%)</li> </ul>	보고서, 보도자료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분석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20.8)을 통해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활용
- AI·신기술 발전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가명·비식별 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

#### □ 갈등요인

- 가명정보 활용제도는 있으나, 가명처리 및 결합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여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애로
- 전 분야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정보제공자·수신자·정보주체 등 참여 주체별 이해관계 상이

#### □ 갈등 관리 방안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기술 개발과 자유로운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강화(I-3-①)

#### □ 추진배경 (목적)

-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고시·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과 온라인 시스템 등 지원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아직 자생적 생태계는 미흡
- 가명정보가 디지털 대전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활용지원 시스템 개선 등 지원체계 강화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가명정보 제도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고도화
  - (지원센터) 지역 소재 기업, 학교 등에 가명정보 처리·결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 추진 : <sup>현재</sup>5개 → <sup>목표</sup>7개
    - ※ 기 구축 지원센터(개소 2년차 이상)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 컨설팅
  - (컨설팅) 인프라, 경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기관에 법제도, 기술, 적정성 검토, 결합 절차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 추진(22회 이상)
-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실화
  - (전문가 풀)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전원 재구성, 규모 확대(150→200명) 및 전문분야 세분화 추진
  - (전문교육) 대상별(기본·실무·행정공공기관과정·전문가 등) 및 단계별(기초·심화)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
- 가명정보 선도사례 발굴 및 홍보
  - (결합사례 발굴) 보건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발굴·선정하고 결합 성과 홍보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 개최	3월	
	제4기 가명정보 선도사례 공모	3월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과정 운영	3월	
2/4분기	가명정보 활용 종합 컨설팅 수행	4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규 공모·선정	5월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6월	
3/4분기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 구성·위촉	8월	
	가명정보 전문가 풀 워크숍 개최	9월	
4/4분기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발전방안 자문회의	11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11월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성과 발표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데이터 활용 기업·기관, 연구자, 데이터보유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현장 소통 강화

구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가명정보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24.2월
발표회	가명정보 활용 연구성과 홍보 및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의견수렴	'24.3월
간담회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를 통한 데이터 활용 관련 지역 소재 기업 애로사항 청취	'24.6월
워크숍	가명정보 전문가 풀 워크숍 개최를 통한 가명정보 제도·기술 동향 공유, 전문가풀 운영 관련 개선방안 등 논의	'24.9월
자문회의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발전방안 자문회의	'24.11월

#### □ 기대효과

- 개인정보의 안전한 분석·결합 환경을 제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3	'24
개인정보활용지원(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 활용지원(1032)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302)	일반회계	50	33
②	개인정보 보호강화(1031) ■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304)		15	1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50%)	신규	신규	신규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li> <li>-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센터별* 운영성과 평가 실시 여부</li> <li>* 강원, 부산, 대전</li> </ul>	공문, 보도자료, 보고서 등
가명정보 교육과정 및 컨설팅 운영 (50%)	신규	신규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li> <li>- 교육 : 대상별(예비, 실무, 전문, 공공, 전문가Pool, 특강 등 6개) 운영 중인 교육과정 중 집합과정 (24회)을 성과관리 목표로 설정</li> <li>※ ('23) 5개과정, 26회→('24) 6개과정, 24회</li> <li>※ '23년대비 교육예산 52.3% 삭감으로 집합교육 축소 불가피</li> <li>- 컨설팅 : 적정성 검토, 결합 절차 등 가명처리 전단계에 대해 컨설팅 (22건)</li> <li>※ ('23) 종합컨설팅 15건, 부분컨설팅 31건→('24) 종합컨설팅 22건</li> <li>※ 종합 1회는 부분 10회 상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 실적/목표(24회) × 100%</li> <li>○ 컨설팅 : 실적/목표(22회) × 100%</li> <li>※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li> </ul>	공문, 보도자료, 보고서 등

## ②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I-3-②)

### □ 추진배경 (목적)

- AI·신기술 발전과 국제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되면서 현장에서 보다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수요 지속 제기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선진화

- (개인정보 안심구역)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분석·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운영 개시\*

\* '24년 시범운영기관 2개소(국립암센터, 통계청) 본격 운영 및 추가지정 공모 추진(1개소)

- (규제 개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예)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보호법 규제 실증특례 추진 등

#### ○ 가명정보 처리·활용을 위한 참조모델 등 기준 제시

- (가이드라인 개정)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비정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하는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조모델) 합성데이터의 ①안전한 생성절차 ②생성기법 ③유용성안전성 평가방법 ④실제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과정을 정리하여 합성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가 참조할 수 있는 권고기준으로 제시

- (우수사례 발굴) 개보위·과기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합 운영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가명정보 활성화 효과 극대화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21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18년~)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2월	
	가명정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2월	
	가명정보 활성화 통합 경진대회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개소(통계청)	4월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 마련	4월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개선 연구용역 추진	5월	
3/4분기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신규 지정(1개소)	7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개소(국립암센터)	7월	
	가명정보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 추진	9월	
4/4분기	가명정보 활성화 통합 경진대회 시상	11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현장방문 및 정책현장 의견 수렴 (통계청 '24.4월, 국립암센터 '24.7월 개소 예정)

구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24.2월
현장방문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통계청) 개소 및 현장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국립암센터) 개소 및 현장 의견수렴	'24.7월
간담회	가명정보 활용 관련 현장 애로 청취를 위한 학계·산업계 간담회	반기 1회

□ 기대효과

-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단체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3	'24
개인정보활용지원(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 활용지원(1032)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302)			50	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합성데이터 생성 및 참조모델 공개(50%)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분야별 합성데이터 생성 (5종)</li> <li>* 보건의료(정형·비정형), 공공안전(비정형), 금융(정형·비정형)</li> <li>○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프로세스 참조모델 마련 및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데이터 생성 (50%): 실적/목표(5종)×100%</li> <li>○ 참조모델 마련 (50%)</li> </ul>	보도자료, 보고서 등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50%)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개소</li> <li>○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추가 공모·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운영(70%):개소실적/목표(2개소)×100%</li> <li>○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추가 선정 (30%):정상추진/목표(1개소)×100%</li> </ul>	공문, 보도자료, 보고서 등

### ③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I-3-③)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전 분야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3.3.14)
-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마이데이터 세부기준 마련

- 전송의무자, 전송대상 정보항목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 마련·개정 추진
- 마이데이터 참여자 이해도 제고 및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부당전송 유지 방지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 합리적 마이데이터 전송비용 분담체계 도입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비용분담 기준(안) 마련

##### ○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1차년도 구축 추진

\* (주요기능) 전송이력 조회, 전송요구 중단 및 전송정보 파기 요청 등

- 마이데이터 참여자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연계 여부 실증, 보안·인증 및 전송절차 등 검증을 위한 전송 인프라 실증사업\* 추진

\* 분야별 전송데이터 형식, 전송방식, 상세 기능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 및 규격 등 실증

- 전분야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추진

○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지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도와 국가적 파급력이 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 및 개발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 공고	1월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 착수	3월	
	민관합동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3월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사업 공고	3월	
2/4분기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1차 구축사업 공고	4월	
	마이데이터 시행령(안) 위원회 보고	4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고	6월	
	마이데이터 시행령(안) 관계부처 협의	6월	
3/4분기	민관합동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	9월	
	전문기관 지정심사 안내서 마련	9월	
4/4분기	마이데이터 법제도 안내서 등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지원 사업 완료	12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1차)	12월	
	마이데이터 비용분담 기준(안) 마련	12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안) 개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일반 국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관·기업 등
- 이해관계자 : 산업계 및 시민사회, 일반국민

□ 기대효과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3	'24
개인정보보호(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 활용지원(1032)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303)			32	77
② 개인정보 활용지원(1032)	일반회계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304)			-	7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전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마련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법령(안) 마련(25%)</li> <li>- 하위법령(안)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수렴(40%)</li> <li>- 하위법령(안) 규제 및 법제처 심사(25%)</li> <li>- 하위법령(안) 국무회의 통과(10%)</li> </ul> </li> <li>○ 마이데이터 안내서, 가이드라인(안) 마련 / 3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법령 개정 × 80%</li> <li>○ 실적/목표(3종) × 20%</li> </ul>	공문, 보도자료 등
국민, 기업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발굴 및 마이데이터 표준화 개발 추진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데이터 표준API 개발수 / 15개</li> <li>○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추진 / 5개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목표(15개) × 50%</li> <li>○ 실적/목표(5개) × 50%</li> </ul>	공문, 보도자료 등

**성과목표 I-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제도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제도 기반 마련(시행령·고시) 및 평가제 운영
  -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 고도화, 우수기관·직원 대상 포상 근거 마련,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통한 역량개선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수행실태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 개선 추진
  - 영향평가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요약본 제출 및 공개 현황 등 평가 수행기관 대상 실태 점검 실시
  - 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표 개선, 수행안내서 개정 등

## □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보호 활성화

- 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 CPO 관련 제도(시행령·고시) 개정, CPO협의회 구성 및 공식 출범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자율규제 이행점검 실시 등
-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및 자율적 보호문화 정착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기반 및 역량 강화	·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기반 마련
관리과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 보호수준 평가제 운영/영향평가제 개선
	민간부문 자율보호 역량 강화	· 처리방침 평가제 운영/자율보호 활성화 노력/개인정보 교육/문화 확산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반 마련	신규	100%	100%	100%	공공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보호 제도개선, 자율보호 강화제도 운영, 보호문화 확산을 목표치로 설정	○ [자율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목표(2건)× 0.7+ 민관협업을 통한 교육 및 문화확산 실적/목표(3건)× 0.3] × 100(%)	목표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 및 공문서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분석

-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수집·활용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핵심 데이터의 상당부분을 개인정보가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 고조
- 하지만 개인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 갖고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한계
-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현행 법 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하기 모호하거나 법령 미비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

### □ 갈등 요인

- 정부의 일률적 규제 및 조사·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민간과의 갈등 및 저항을 유발할 수 있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로도 비춰질 수 있음
-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될 경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정보주체가 입는 피해가 막대함에 따른 사회적 손실 야기

### □ 갈등 관리 방안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전 사전적 진단·평가를 통한 자율적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기관별 자율적 보호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실행 및 정책적 지원 실시
-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활동을 통하여 정보주체와 처리자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자율적 보호문화 조성 및 확산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I-4①)

#### □ 추진배경 (목적)

-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민감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특별한 관리 및 사전적 보호조치 필요
-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된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역량 향상 유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평가 내실화
  - 공공기관의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방법 고도화, 환류체계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의 성공적 전환 시행
  - 평가대상 및 절차,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활용 등 환류 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24.3.15)
  -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정비 실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공공의 개인정보 처리역량 고도화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영향평가 항목 개정\* 및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하여 영향평가의 체계 개선
    -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별표 평가 항목 개정) 마련("24.4.)
  - 평가제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등으로 인한 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평가기관 신규 및 재지정 추진
  - 영향평가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요약본 제출 및 공개 현황 등 평가 수행기관 대상 실태 점검 실시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3년 공공기관 관리수준진단 정성지표 진단 및 현장검증 실시	2~3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3월	
2/4분기	'23년 공공기관 관리수준진단 결과 발표	4월	
	'24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단 구성	5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5월	
	'24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편람 배포	6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안 마련	6월	
3/4분기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신규·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7월~9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신규 및 재지정 추진계획 수립	8월	
4/4분기	'24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정량지표 자체평가 실시	9월~12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기관 대상 실태 점검계획 수립	10월	
	'24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단 운영위원회 운영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24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관련 설명회 및 대상기관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 수렴하여 평가시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24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설명회	5월
간담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6월
현장방문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 실무자 현장의견 수렴	8월
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신규 기관 지정 및 기존 기관 재지정 안건)	10월

### □ 기대효과

-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 보유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강화
- 공공기관 대상 사전적 개인정보 보호·처리수준 평가 수행을 통하여 상시적 개인정보 보호 점검 및 개선
- 영향평가 대상기관 수행실태 점검으로 영향평가 제도 이행을 제고,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한 영향평가 체계의 효율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sup>1)</sup>	'23	'24
개인정보보호강화( I -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61 (92)	62 (90)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300)			61	31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301)			-	31

※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23년) 사업이 '24년에 ①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②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으로 분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기획·운영 (70%)	신규	신규	신규	100%	보호수준 평가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고시 제정·추진 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 제출자료 검증을 위해 전년 대비 현지실사 대상 기관수 10% 상향을 목표치로 설정	○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30%) ○ 보호수준평가 현지실사 100개 기관 이상 실시(70%)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30%)	-	-	100%	100%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고시, 수행안내서 등 제도개선 실적을 목표로 설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5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50%)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② 민간 자율보호 역량 강화(I-4-②)

### □ 추진배경 (목적)

- 일률적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처리자 및 정보주체 스스로 상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환경 구축
-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맞춤형 전문 교육 및 문화 정착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간의 자율적 보호역량 강화 및 활성화 유도
  -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방침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처리자의 책임성 및 정보주체의 알권리 강화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 마련
  - 자율규제 필요 분야 발굴 등을 통한 자율규제 참여 확대, 자율규약 이행점검 및 갱신, 자율보호 활동 평가 등 환류
  - 보호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기술, 처리방침 작성 지원 및 컨설팅
- 국민 참여 중심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문화 확산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주간(9.30.~10.4.)을 실시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문화 집중 확산
  -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개인정보 정책성과를 공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운영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래의 개인정보 법·제도 전문가 및 문화 확산

○ 정보주체·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AI 등 신기술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행태정보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처리자 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교육 확대 등 정보주체 대상 맞춤형 보호교육 강화 운영
- 교육부 협업으로 국내 대학에 개인정보 전공 개설·운영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반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23년 자율규제 활동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1월	
	· '24년 제1차 자율규제 협의회 개최	1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월	
	· '24년 개인정보 교육 계획 수립 및 기관 대상 배포	2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 마련	4~5월	
2/4분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시행계획 수립	5월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제도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CPO 경력인정에 관한 고시 마련	4월	
	· 자율규제 이행점검 실시(주문배달 분야)	4월	
	· 셀러들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4월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 출범	6월	
3/4분기	· CPO 업무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	7월	
	· 자율규제 이행점검 실시(오픈마켓 분야)	8월~11월	
	· 개인정보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8월	
	·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9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원 컨설팅 추진	9~12월	
4/4분기	·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10월	
	·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교육, 컨설팅 추진	10월~12월	
	· 자율규제 이행점검 실시(셀러들 분야)	10월~12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완료	12월	
	· 개인정보 보호 교육운영 안내서 마련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NCS 기반의 개인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추진
- 민관협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주간'의 성공적 참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대상 보호주간 운영계획 설명회 및 의견수렴
- 현직CPO들이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을 통한 'CPO업무 가이드라인 발간' 및 CPO협의회 발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간담회	개인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 관계기관 간담회	3월
간담회	CPO업무 가이드라인 및 CPO협의회 발족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3월~4월
간담회	개인정보 보호주간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관, 기업 대상 간담회	5~6월

## □ 기대효과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자율보호 체계 마련 및 영세·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 및 정부 직접규제 비용 감소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리자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정착
- 국내 대학(원)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개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개인정보 분야 국가자격 도입을 통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성 강화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인정보 모의재판' 등을 통한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강화( I -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보호강화(1031)		76 (92)	75 (90)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300)		61	62
	■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304)		15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개선·운영 (30%)	신규	신규	신규	100%	-'24년 신규로 시행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관·기업 수(50%) : 실적/목표(45개사)</li> <li>○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원 컨설팅(30%) : 실적/목표(60개사)</li> <li>○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시 제정 및 작성지침 개정(20%)</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자율규제 활성화 노력 (30%)	신규	신규	신규	100%	-기존 성과지표*는 자율규제 의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자율규제 제도 추진 및 성과를 위해 실제 이행점검 수행 및 CPO제도개선 실적 등을 신규 지표로 설정 * 단체 신규 지정, 컨설팅 횟수, 협의회 개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O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및 고시·가이드라인 마련) x 50%</li> <li>○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점검 실시기관 수 /계획기관 수(35개사)) x 50%</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교육 및 문화확산(40%)	신규	신규	신규	100%	-직전 3년('21~'23) 실무자 교육 실적 평균(46회) 및 정보주체 대상 현장교육 실적 평균(163회)을 고려 하여, 전년 대비 각기 10% 상향한 공격적 목표 (50회/170회) 설정 -전년도 보호주간 참여기관 수준에 준하여, '24년 참여 기관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역량 교육 실시 횟수/50회)×30% +(정보주체 현장교육 실시횟수/170회)×30%</li> <li>○ 개인정보 보호주간 참여 민간기업 수 / 20개사) x 40%</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성과목표 I-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

**(1) 주요 내용**

- 신뢰가능한 AI 개발·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방향 정립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AI 유형·용례별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마련
  - AI 관련 신속한 법령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지원
  -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 높은 규범 마련을 위한 국내·외 협력 주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기준 마련	신규	신규	신규	3건	'24년 주요업무 실행계획상 원칙기반 규율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기준 마련 계획 반영	①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②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③ AI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공문, 내부보고서 등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 AI의 발전 초기 단계에서 과거와 같은 경직적인 규정 중심(rule-based) 규율은 신기술 환경에 기민(agile)하게 대응하지 못해 혁신을 저해할 우려

- 이에,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식별·최소화하면서도,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 추진 필요

□ **갈등요인**

- AI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AI 등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
- 전통적 프라이버시 보호원칙과 AI 간에는 다양한 충돌·갈등이 존재하여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 원칙을 AI 개발 환경에 적용 시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 해소 필요

< OECD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과 AI 간 갈등관계 >1)

OECD 원칙	AI 영역에서의 갈등관계
수집 제한, 목적의 명확화, 이용 제한	AI 환경에서는 예측하지 못했고 대부분 예견할 수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므로, 사업자가 앞으로 수집될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될지 미리 완전히 인지하기 어려움
최소수집	알고리즘이 무엇을 학습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처리 목적을 정의하고 그 목적 하에서만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곤란
개방성, 개인의 참여	AI는 완전히 이해·설명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불투명성), 데이터를 투명하게 처리하라는 요구사항 관철 곤란
정보의 정확성	정정·삭제요구권 보장을 의무화할 경우 자칫 권리행사 빈도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었을 때 AI의 편향성 문제 발생 가능

□ **갈등 관리 방안**

- ‘원칙 중심’ 규율체계를 통해 전통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기반한 기존 법·제도와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 간의 간극을 줄여 나감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김태오(역),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 불필요한 갈등 증가에 대한 관건",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 2018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AI·데이터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혁신지원제도 활용 (I-5-①)

#### □ 추진배경 (목적)

- AI 기술의 급성장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대
- AI 활용의 구체적 맥락·용례를 고려한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기준 마련 추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생성형 언어모델(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챗GPT를 비롯한 LLM은 웹(Web)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공개된 정보에 크게 의존하나 국내 법제도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 없음

- 미국·유럽 등 해외사례, 공개된 정보 활용시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국내 법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AI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암기(memorize)하여 원본 그대로 노출할 위험, 프롬프트 오류 등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노출될 위험 등

① 공개된 정보의 활용이 인정될 수 있는 목적의 적법성, 공개된 정보처리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

② 데이터 전처리 - 학습 - 서비스 등 AI 생애주기별, AI 유형별로 국민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안내

\* 최소수집, 고위험 항목 비식별화, 결과값 필터링(output filter), 처리정지권 보장 등

-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AI 개발·서비스 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해 불안감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가이드라인 마련
    - \* 데이터 출처 및 처리방식,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권 행사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안내하는 기준 마련
-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기업이 AI 개발·활용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마련
  - AI 유형·용례별로 ①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 ②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저감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AI 신뢰성 확보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AI의 안전한 개발·활용을 위한 혁신지원 제도(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샌드박스) 활용	상시	
2/4분기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24.4월	
3/4분기	'AI시대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배포	'24.7월	
4/4분기	'AI 유형·용례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구축 및 발표	'24.10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주요 정책수요자인 개인정보처리자(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와 정보주체(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된 국민 또는 AI 제품·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단체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필요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데이터 처리기준(1분과) 회의 개최	수시
간담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리스크 평가(2분과) 회의 개최	수시
간담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투명성 확보(3분과) 회의 개최	수시
현장방문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AI시대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	'24.5월
현장방문	'AI 유형·용례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안)' 의견수렴	'24.8월
회의	혁신지원 제도(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샌드박스) 활용 관련 사업 설명 청취	수시

기대효과

- 원칙 기반의 유연한 규율체계를 신속히 도입하여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인 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AI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법령해석 실적	신규	신규	신규	100%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AI 사전적정성검토, 규제샌드박스, 법령해석 처리율	처리/접수 ×100%	공문, 내부 검토보고서 등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2회	'24년 신규지표로서 '23년 실적(1회) 대비 도전적으로 목표설정	회의 개최 횟수	보도자료, 내부 보고서, 메모보고 등

## ② AI 국제규범 논의 선도 및 국내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I-5-②)

### □ 추진배경 (목적)

- AI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개인정보 침해, 거짓정보, 정체성 위협 등)은 급속도로 국경 간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제적 상호운용성 있는 AI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
- AI 국제규범 논의 과정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전략 마련 등 적극 참여 및 대응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운영 위원직' 및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집행위원직' 및 'AI 워킹그룹 공동의장직'을 맡아 AI 국제규범 논의과정에 주도적 참여하고 있음
- 실무급에서도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와 법제개선 사례 공유 등을 위한 AI 정책협의회 정기적 개최 등, AI 주요국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국제적 상호운용성 높은 AI 규범 마련 추진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영상회의 참여	수시	
1/4분기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과의 AI 정책협의회 개최	'24.2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제2차 대면회의 참여 * 제1차 대면회의는 '23.12월 참여 완료	'24.3월	
2/4분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제3차 대면회의 참여	'24.4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제4차 대면회의 참여	'24.5월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과의 AI 정책협의회 개최	'24.5월	
3/4분기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과의 AI 정책협의회 개최	'24.9월	
4/4분기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구(CNIL)과의 AI 정책협의회 개최	'24.11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는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적극 발굴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데이터 처리기준(1분과) 회의 개최	수시
간담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리스크 평가(2분과) 회의 개최	수시
간담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투명성 확보(3분과) 회의 개최	수시

□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AI 분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여건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AI 규범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 노력도	신규	신규	신규	8회	AI 규범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실적	① 고위급·실무급 국제행사·회의·면담 등 개최·주제·참석 횟수 ② 국제기구 보고서·결의문 등에 의견 제시·참여 횟수 * '24년 신규지표로서, '23년 실적(3회) 대비 도전적으로 목표설정	보도자료, 메모보고, 보고서, 회의자료 등

## 전략목표 II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기본방향

####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2 :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
- 성과목표 3 :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
- 성과목표 4 :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 성과목표 5 :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 성과목표 6 :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

####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온라인 전환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들의 관심 증가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뒷받침 필요
- 개인정보 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구제 수단이 미흡
- 클라우드 등 급변하는 온라인플랫폼 환경과 신기술에 대응한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요구

####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법령상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권 보장 강화
-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으로 법적 불확실성·모호성 해소로 국민의 피해 사전 예방
- 개인정보 유출·침해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안전한 디지털사회 구현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국민 권익 보호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6	6	12	1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b>II.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b>		개인정보 실태점검 이행률
<b>1.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b>		체계화된 조사 기반 마련 및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점검·조사 강화
	①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기반 강화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제도 개선 노력도
	②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노력도
<b>2.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b>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분수용률
	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처분	총 조사 처분 중 주요사건 조사·처분 비중
	②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준비	①시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②스마트카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③해외직구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b>3.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b>		사고 조사 및 처리실태 점검 이행률
	①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대응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 심의·의결 건수
	② 주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주요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완료여부
<b>4.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b>		법령 제개정안의 침해요인평가 내실화
	① 국세·산업 등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개선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권고의 이행실적
	② 침해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 입법지원	법령 제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 준수율
<b>5.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b>		분쟁조정 성립률
	①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이용 지속 확대	분쟁조정제도 개선노력
	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개정
<b>6.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b>		온라인플랫폼 등 신기술 분야 제도개선(안) 마련
	①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 조성	①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확산 ②사전적정성 검토제 적기처리율
	② 온라인플랫폼의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실태점검 이행률

**(1) 주요내용**

- **사전 예방으로서 법령 침해요인 분석 및 제도 개선**
  -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침해요인 체계적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신속한 개선으로 공공부문 과다수집 방지
  - 공공부문 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후속 조치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
  
-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 기술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사계획 마련 및 점검
  - 해킹 및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과 사고원인 분석 점검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의 기반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 **사후 구제로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운영**
  - 분쟁조정 제도 개선('23.9.15.)에 따른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분쟁조정 절차 확립과 분쟁조정 이용 확대 지속 추진
  - 손해배상책임 보장 대상자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함에 ('24.3.15.)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에 민관협력 자율규제 적용으로 실효적인 위·수탁 감독체계 마련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추진
  -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기반 마련

## (2) 성과지표

###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개인정보 실태 점검 이행률	신규	신규	신규	100%	100%	100%	업무계획 상 조사기관 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 이행 비율을 산정	(점검완료 사업자 수 / 점검계획 사업자수) × 100%	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로 혁신된 새로운 생태계 도래로 ICT 기반의 신산업 서비스 활성화
- (탈 국경·서비스 양상)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인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다양화·대량화·일상화로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 증가
-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수집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삶의 편의성은 향상되었으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생성·이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데이터 활용) ICT, 의료, 금융 등 관련 부처와 기업에서 데이터 활용 정책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양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 (사전 실태점검) 주요이슈 사항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필요
- (침해요인평가)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유발요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
- (분쟁조정제도 강화) 개인정보 침해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기능 강화 필요

## □ 갈등요인

- 공공기관이 수집·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 지속 제기
-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국민의 주요 개인정보·불법유통 게시물에 대한 제3자의 불법수집으로 인한 보이스포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처분 수용도가 낮아지고,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이의제기 및 소송 빈도도 증가
-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 민원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처분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대가 차츰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분쟁조정·손해배상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온라인플랫폼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조치 일부가 플랫폼 환경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
-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개인정보 규제가 데이터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기술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제도 도입 요구

## □ 갈등관리계획

-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
- 국내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 탐지·삭제함으로써 대국민 개인정보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

-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조사·처분 신뢰도 수용성 제고
- 개인정보 침해요소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의 자율개선을 유도
- 개인정보 분쟁조정·손해배상보장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 온라인플랫폼의 기술·운영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 도모
-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PbD 관점에서 법 적용방안을 기업과 함께 사전에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 집행체계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성과목표 II-1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 (1)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기반 강화

- 개인정보 유출·침해 조사 및 사전실태 점검 활동을 매뉴얼화 하고, 조사관 전문가 교육을 통해 조사관의 제도·기술적 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기틀 마련
- 공공기관·기업 등의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 조사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 피해방지 제도로서의 규제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행령 등 개선 추진

#### □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실태점검 추진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지원
  - \*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2년차 사업으로서, 표준배포시스템 개발·배포 부처 및 이용 지자체 50개소 대상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사실이 확인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처분 등 대응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체계화된 조사 기반 마련 및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점검·조사 강화	신규	신규	신규	100%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규제개선), 조사업무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기반을 체계화하고, 공공부문의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조사 강화	○ [보호법 시행령 개정, 조사업무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2개) × 50%] + [집중관리시스템 등 공공기관 점검·조사(55개) × 50%]	보고서, 공문 등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IT·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로 개인 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
  - 공공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들의 관심 증가
- 디지털 시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관리 강화 추세로 분야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기업 등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점검·평가제도 증가
- 해킹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비례하여 증가

#### □ 갈등요인

- 개인정보 침해 조사 또는 점검 시, 조사관의 경험·지식 등에 따라, 조사의 내용·프로세스 등이 달라지고 사안 대응의 신속성·정확성 등에 대한 불균형 발생 우려
- 현재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매 2년마다 동일 기관 반복 조사, 다른 조사·점검(예 : 개인정보보호인증 등)과 점검항목 중복 등으로 조사 대상자의 피로도 증가 및 불만 야기 우려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도 발생
- 공공기관이 수집·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지속 제기

-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통계·공중위생 분야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갈등 및 협업 필요성 제기

\* 보호법 제58조 제1호 및 제3호가 삭제되어 '23.9.15일부터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과  
감염병 관리 등 공중위생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도 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됨

#### □ 갈등관리계획

- 개인정보 유출·침해 조사 및 사전실태 점검 등의 내용·프로세스 등  
매뉴얼화를 통해 조사의 노하우 축적 및 조사활동의 불균형 방지
-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지 않고,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 합리화 등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추진
- 통계청, 질병관리청 등과 공동으로 통계작성 및 공중위생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표본점검을 통해 취약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등 개인정보 안전한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기반 강화(Ⅱ-1-①)

### □ 추진배경 (목적)

- 다양하고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조사·점검 활동을 체계화하고 조사관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기틀 마련
- '17년부터 운영되어 온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 조사 제도가 반복·의례적 점검으로 형식화되거나 다른 조사·점검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사전점검에 대해, 큰 틀에서는 조사 절차 전반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개별 조사관 차원에서는 현장 적합성 있는 조사 역량 강화 추진
  - 개인정보 침해 조사·점검 시,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단계부터 조사, 심의·의결, 처분 후 이의제기 등 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 활용하고 조사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배포 및 운영
  - 아울러 조사관 전문교육 실시, 특히 디지털화된 처리 환경을 반영해 IT 등 분야 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조사의 정밀성, 기업의 처분 수용성을 높여 기업 등의 자발적 법령 준수 노력 유도
- 공공기관·기업 등의 고유식별정보 관리 실태 조사의 형식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른 점검(ISMS-P 인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과의 중복 조사를 지양하고 점검 기관별 조사 주기 완화(2년→3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 제도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점검대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안내 등 내실을 강화하여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24.3월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계획 수립	'24.3월	
2/4분기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	'24.5월	
3/4분기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4.7~9월(매월)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이행	'24.7~11월	
4/4분기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4.10~11(매월)	
	조사업무매뉴얼 마련	'24년 12월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검토	'24년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정 시행령 반영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현장 설명회 실시
-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조사업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조사관 의견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현장 설명회	'24.6월
현장 의견수렴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설문 조사	'24.7~11월(매월)
현장 의견수렴	조사업무매뉴얼 마련 위한 조사관 의견수렴	'24.7월

### □ 기대효과

- 조사·점검의 내용·프로세스 등 매뉴얼화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로, 조사 체계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하우 공유 및 매뉴얼 지속 업데이트를 통해 조사분야 역량 강화의 선순환 기반 마련
-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제도의 형해화(形骸化)를 방지,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국민의 주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를 사전에 예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I-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이슈대응(2034)		일반회계	109 (109)	87 (87)
■ 개인정보침해방지(301)			109	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제도 개선 노력도	신규	신규	100%	100%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을 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60%)</li> <li>○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업무 매뉴얼마련 (40%)</li> </ul>	공문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②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Ⅱ-1-②)

### □ 추진배경

-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7., 정책협의회)에 따라 집중관리시스템(30개 부처, 126종\* 1,515개)에 대해 3년간('23~'25) 중점 점검하여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 단일접속시스템 78개 + 표준배포시스템 1,397개(패키지 8종) + 개별시스템 40개
- 보호법 제58조 개정('23. 9. 15. 시행)으로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 통계·공중위생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개정 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
  - \* 보호법 제58조 제1호(통계법) 및 제3호(공중위생 등) 삭제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 10대 과제 이행실태 점검(2년차)
  - 표준배포시스템 개발·배포부처\* 및 이용 지자체 50개소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배포한 교육부는 제외('23년 既점검)

#### [참고: 표준배포패키지 8종]

- (행정안전부) 서울행정, 시도행정, 표준지방세정보,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4개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세움터),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3개
-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점검 대상기관과 시스템별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24.9월중)
  - \* 점검대상 기관의 점검 관련 사전자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0개 과제 관련 우수사례 등 이행방안 안내와 현장점검 종료일에는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점검결과 강평하는 등 소통 및 협업 강화 추진

-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주요 통계\*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파기와 안전한 처리실태 등을 점검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대표 통계를 선정, 우선 점검(통계청 협업)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사실이 확인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및 처분 등 대응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공부문 유출·침해사고 대응	연중	
2/4분기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이행 실태점검 계획 수립·시행	'24.4월~	
	주요 통계 실태점검 계획 수립·시행	'24.6월~	
3/4분기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이행 실태점검 결과보고	'24.9월	
4/4분기	주요 통계 실태점검 결과보고	'24.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주요 통계 선정 및 실태점검을 위해 통계청과 협업 추진
  - 주요 대상기관과 점검결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 개최
- 집중관리시스템 이행 실태점검 완료 후 주요 대상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점검결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통계청과 주요 통계 선정 실무회의 개최	'24.5월
간담회	주요 표준배포시스템 운영·이용기관과 결과 공유 간담회 개최	'24.9월
간담회	주요 통계작성 담당기관과 결과 공유 간담회 개최	'24. 12월

####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보호 수준 및 국민의 신뢰 제고
- 통계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사전점검을 통해 개정 보호법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이슈대응(2034)		일반회계	109 (109)	87 (87)
■ 개인정보침해방지(301)			109	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노력도	신규	신규	신규	55개	집중관리시스템(50개) 운영기관 및 통계 등 개인정보 처리기관(5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목표치로 설정	○ 집중관리시스템 실태점검(50개) ○ 통계 등 개인정보 처리기관 실태점검(5개)	보도자료 및 안건 등 증빙자료

(1) 주요 내용

□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신고 사건에 중점을 둔 조사·처분 추진
- 주요 사건 조사·처분을 계기로 관련 내용이 널리 공유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처분 수용도 제고
  - 엄정 제재를 통해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 강화 유도

□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준비

- AI, 스마트카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파악 및 대응과 함께,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택트 기조 확산 등을 계기로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해외직구 부문의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및 조사·처분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분 수용률	신규	신규	95.3 %	95.3%	출범('20.8.)이후 '22년까지의 수용률(92.6%)과 '23년 수용률 (95.3%) 및 글로벌 사업자 중심 으로 처분 불복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 설정  *(진행소송) 구글(1건 과징금 692 억원), 메타(5건, 과징금 449억원)	○ '24년 처분에 대한 처분 수용 건수 / '24년 총 처분 건수 × 100%	처분 불복 관련 공문 및 처분의결서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분석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전제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  
※ (신고·상담 건수) 177,457('20) → 210,767('21) → 151,603('22) → 109,501('23)
-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언론 등의 외부 지적이 지속되지만 침해요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규제 수요 증가

#### □ 갈등요인 분석

-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개인정보의 유출 및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
-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의 제기(과태료) 및 소송(과징금 등) 빈도가 증가

#### □ 갈등관리계획

-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침해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조사·처분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처분 수용률 제고

### (4) 기타(성과지표의 측정)

- 피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처분(Ⅱ-2-①)

#### □ 추진배경(목적)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에 비례하여 주요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방식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속적 문제 제기
  - ※ 다량·다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글로벌 빅테크, 대기업, 병원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지속 제기중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개인정보처리자 조사·처분 사건 적극 추진
  - (대기업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국외이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
  - (대량유출)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처분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 노력 유도
  - (언론보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신기술에 의한 민감한 정보의 수집·활용, 정보주체를 기만하는 개인정보 수집체계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
- 글로벌 빅테크 등은 사업영역 축소와 사업모델 변경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여 대부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 제기
  - 부과된 과징금과 사업자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된 중요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소송에 대응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1~3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1~3월	
2/4분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4~6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4~6월	
3/4분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7~9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7~9월	
4/4분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10~12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10~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인정보 침해 예방차원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택배사 등 국내 물류업계와 글로벌 빅테크 등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협조요청을 위한 간담회·현장방문 추진
- 글로벌 빅테크의 주장 반박을 위해 법무부의 해외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 관련 논의 등 주요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해외사업자 대상 법 적용 안내서」 발간을 위한 사업자 의견수렴	'24.1월
간담회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류업계 종사자 간담회	'24.4월
부처간 업무협의 (법무부)	글로벌 빅테크 관련 행정소송 공동대응 업무협의	'24.4월~ (수시)

### □ 기대효과

- 유출·침해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조사·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규범이 될 수 있는 사례(Leading Case)를 지속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이슈대응(2034)		일반회계	109 (109)	87 (87)
■ 개인정보침해방지(301)			109	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총 조사 처분 중 주요사건 조사·처분 비중	신규	신규	26.6 %	30%	'22년 실적(10.2%), '23년 목표치(20%)와 실적(26.6%)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대비 12.8% 상향된 목표 설정(전년 목표 대비 50%)	'24년 주요사건 처분건수 / '24년 총 처분 건수 ×100%	처분 의결서 및 보도 자료, 언론기사 등

②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준비(Ⅱ-2-②)

□ 추진배경(목적)

- AI 기반 서비스 확산, 커넥티드카 운행 증가 및 자율주행 AI 산업 활성화 등 새롭고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처리가 대두됨에 따라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앱을 배포\*하는 과정상 안전조치, 커넥티드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행정보 수집,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등이 주요 위협요인

\* 오픈AI는 누구나 LLM에 기반한 앱을 개발·배포할 수 있도록 GPT 스토어 제공

\*\* 美테슬라 고객·직원·협력업체 정보(한국인 850명 포함) 약 100GB 규모가 유출 보도('23.5.27.)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 해외 배송·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인한 해외직구 거래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비례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
  - \* (해외직구 규모, 조 원) ('19) 3.6 → ('20) 4.1 → ('21) 5.1 → ('22) 5.3 ('22년 국가별 규모, 조 원) 미국(2.0), 중국(1.5), 유럽(1.1), 일본(0.4)
- 해외직구 거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각종 우려가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는 중
  - \*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 이용 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우려 지적('23.10. 국회 정무위 국감)
  -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문지마 광고 폭탄..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24.2.18. 이투데이)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선제적 조사, 사전 실태점검 추진
  - (AI 서비스) 새롭게 출현하는 AI 생태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분석하고, AI 개발에 사용된 정보의 수집 출처 적법성과 참여 주체별 책임분담 및 조치방안 점검
    - \* (점검대상) 국외 사업자 6개, 국내 사업자 6개 등 총 12개 사업자
  - (스마트카) 차량 제조사의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행 정보와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행위 적법성·투명성과 자율주행 개발 시 수집되는 정보의 안전조치 등 점검
    - \* (점검대상) 국외 제조사 1~2개, 국내 제조사 1~2개 등 총 3개 제조사
  - (해외직구)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정보주체 대상 동의 절차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유무 등을 점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뒷받침
    - \* (점검대상) 거래규모 등 기준 상위 4개 직구 플랫폼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현황조사	'24.1~3월	
	해외직구 관련 조사계획 수립	'24.1~3월	
2/4분기	AI, 스마트카 분야 실태점검 등 계획 수립	'24.4~6월	
	해외직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 진행	'24.4~6월	
3/4분기	AI, 스마트카 분야 자료제출 요구 등 실태점검 추진	'24.7~9월	
	해외직구 사업자 대상 시정조치안 검토	'24.7~9월	
4/4분기	AI, 스마트카 분야 실태점검 결과 정리	'24.10~12월	
	해외직구 사업자 대상 시정조치안 확정	'24.10~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사·실태점검 과정에서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고, 당국의 규제 방향 안내를 통해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담회 추진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여, 해외직구 관련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

\* 개인정보위,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여가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관세청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AI, 스마트카 분야 실태점검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24. 4분기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발표	'24. 1분기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한 부처 간 협업 강화	'24. 1~4분기

### □ 기대효과

-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의 보급·실증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중인 스마트카 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 제고

-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를 통해 정보주체 권익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해외 직구사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뒷받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 I -1-정보화①)				
① 개인정보이슈대응(2034)		일반회계	109 (109)	87 (87)
■ 개인정보침해방지(301)			109	8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AI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신규	신규	신규	100%	AI 분야 주요 국내의 사업자(12개)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를 목표로 설정	'24년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수/실태점검 목표 사업자수 ×100	조사·실태점검 보고서 또는 관련 보도자료
스마트카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신규	신규	신규	100%	스마트카 분야 주요 국내의 사업자(3개)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를 목표로 설정	'24년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수/실태점검 목표 사업자수 ×100	조사·실태점검 보고서 또는 관련 보도자료
해외직구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신규	신규	신규	100%	해외직구 분야 주요 온라인 플랫폼(4개)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를 목표로 설정	'24년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수/실태점검 목표 사업자수 ×100	조사·실태점검 보고서 또는 관련 보도자료

**성과목표 II-3**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

**(1)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한 엄정·신속한 조사 등 대응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환경을 조성 도모
  - 데이터 경제시대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으로 유출·침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식음료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조사

-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 중인 주요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처리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점검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침해 발생 위험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여 개선 유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사고 조사 및 처리실태 점검 이행률	신규	신규	신규	90%	신규지표로 유출·침해사건에 대한 엄중 조사와 주요분야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이행을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부서 업무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지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신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를 90%로 설정함. 관리과제인 ①사고 조사·처분 및 ②처리실태 점검을 포괄하며, 과제 업무비중을 반영함	이행률 = ①(유출·침해사고 조사·처분 실적/목표(70건)×70%) + ②(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실적/목표(2건)×30%)	①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보도자료 등 조사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②실태점검 결과보고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요인

- 유출·침해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신속·엄중한 조사와 처분 요구 증가

\* '22년 유출 167개 사업자 4,977천건, 침해신고 7,973건, 침해상담 151,603건 등

-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신고·민원 증가 등 조사·처분에 대한 요구는 대폭 증가한 반면, 제재처분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불만과 함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짐
- 또, 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 수집·이용이 증가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어 해킹 공격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증가

#### □ 갈등관리계획

- 유출·침해사고에 대한 엄중 조사·처분에 대한 갈등 요인은 주로 국민들의 엄중 조사·처분 요구와 사업자의 규제 강화 우려(또는 규제 완화 요구) 간 입장 차이에 따른 것으로
- 신속·엄중한 조사·처분과 처분결과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 조사·처분에 대한 기업 이해도를 높여 두 이해관계자의 정책 추진에 대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계기로 활용
- 또,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주요분야의 처리실태 점검은 점점 대상 사업자의 반발이 주된 갈등 요인으로,
- 대상 사업자와는 사전 설명, 결과 공유 설명회 등을 통해 처리 실태 점검에 대한 거부감 해소, 결과 공유로 처리환경 개선 유도 등 상호 공감과 시너지 제고 환경을 만들어 갈등 해소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대응(Ⅱ-3-①)

#### □ 추진배경 (목적)

-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 증가 등에 대해 언론, 국회 등의 지속적인 이슈 제기
  - 특히,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라 처리자에 대한 침해 민원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필요
-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경각심 제고, 국민 우려 해소로 인한 디지털 사회 조성 도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함께 언론보도·국회지적 또는 침해신고 등으로 확인된 주요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처분을 추진

\* 조사·처분 실적 : '21년 49건, '22년 51건, '23년 60건(전체회의 심의·의결 기준)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출·침해사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1~3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1~3월	
2/4분기	유출·침해사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4~6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4~6월	
3/4분기	유출·침해사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7~9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7~9월	
4/4분기	유출·침해사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조사	'24.10~12월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24.10~12월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조사·처분 과정에서 전문가 등과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처분 신뢰도 제고
- 복잡한 유출·침해 사건, 대규모 시스템에서 발생한 유출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등과 처분 방향 등 검토
- 조사·처분시 서면·현장 조사 후 사업자의 위반 관련 사유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 방향 마련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조사	유출·침해 사고 조사시 주요 사업자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주요 사업자 조사시
검토회의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등과 위반행위에 대한 방향 검토	필요시

기대효과

-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침해 위험요인 등에 대한 처리자의 경각심 제고, 국민 우려 해소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조성 도모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 심의·의결 건수	49)	51	60	70	전년도 전체회의 의결건수(60건)와 연간 처분실적 증가율(16.9%)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b>약 17% 증가한 70건을 목표치로 설정</b>	금년도 위원회 심의·의결건수	○ 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② 주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Ⅱ-3-②)

### □ 추진배경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및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 유도과 함께 주요 공통사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식음료 예약·주문)** 식음료 예약·주문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
  - 사업자가 직영하는 예약·주문 시스템(웹·앱)을 조사하고, 키오스크 등으로 조사 범위 확대 예정이며, 확인된 문제점은 개선유도
- **(광고중개 플랫폼)** 제3자 제공 형식 광고 중개사업자의 정보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안전조치 준수 등 점검·개선
  -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보완사항 등은 관련 부처(예, 금융위, 국토부 등)와 제도 개선 등 협업 추진
- 점검에서 확인된 공통 문제점은 제도개선 방안, 법 집행 기준 마련
  - ※ 제도 개선(예) : 중개플랫폼 특성상 제3자 제공 동의 시점에는 제3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동의시에는 제3자의 유형(예, 배달원 등)만 명시하고 제3자가 특정되는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법 집행 기준마련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식음료 분야 기초 조사 및 실태점검 계획 수립	'24.3월	
	광고중개 플랫폼 분야 현황 조사	'24.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식음료 분야(웹·앱) 조사 대상별 서면·현장 조사	'24.6월	
	광고중개 플랫폼 분야 조사 결과보고	'24.6월	
3/4분기	식음료 분야(키오스크) 조사 대상별 서면·현장 조사	'24.9월	
	광고중개 플랫폼 분야 처분 등 후속조치	'24.9월	
4/4분기	식음료 분야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 등 후속조치	'24.12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24.12월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대상 사업자의 보호 조치 책임과 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법적용 리스크 해소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자 설명회	식음료 분야 실태점검 결과 공유 설명회 - 점검 대상 사업자 중심으로 관련 사업자 참석 검토	'24.10월

기대효과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유도를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조성 도모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주요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완료여부	신규	신규	신규	2건	'24년 신규지표로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보통신분야를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태점검 완료로 목표로 설정	분야별 조사·실태 점검 완료 여부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성과목표 II-4**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1) 주요 내용**

□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 현행법령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조문을 체계적으로 분석, 침해요인 식별
  - 현행법령의 단계별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조문 발굴
-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 확인, 개선 권고

□ **침해평가의 처리기간 관리를 통한 입법 지원**

- 개인정보 포함하는 해당 조문에 대해 중앙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검토의견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
- 입법예고 종료일이 임박하거나 종료된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처리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법령 제개정안의 침해 요인평가 내실화	-	-	82.4%	8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부처의 수용실적을 목표로 설정하되, '23년도 실적인 82.4%를 감안하여 '24년에 83%를 목표로 설정	소관부처 수용 법령 수 / 개선권고 법령 수 × 100%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개정 법령 등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복잡·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한 법률안의 양적 증가\*, 생성형 AI 확산, 생체정보 활용 증가 등으로 공공부문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

\* 연도별 법령현황(법제처) : 4,669개('20년)→4,841개('21년)→4,924개('22년)→5,006개('23년)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활용 환경 가속화

#### □ 갈등요인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안 입안 시 사전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무적 절차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없어 부처 수용률 확보에 한계

- 시행령의 경우, 부처에서 수용으로 회신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반영하지 않고,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발생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부처 수용실적 : '23년 82.4%

-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부처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검토시간 부족 및 위원회 개최일정\*과 충돌

\* 월 2회(2·4주 수요일) 개최하여 상정안건 심의·의결

- 현행법령평가의 경우 부처요청 사항이 아닌 제도개선 추진 사업으로 소관부처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한다는 대국민 인식을 우려, 법령개선에 비협조

## □ 갈등관리계획

- 평가기준 및 유형별 평가 사례 등에 대한 설명, 개선권고 사항을 부처(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부처내 의사결정권자 결재확인)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결과통보하여 수용률 제고

\* 시행령의 경우 차관회의 상정 시 개선권고 미반영 법령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미반영 사유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법무감사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종합적으로 대응(입법동향, 국무·차관회의 안건 공유 등)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의 경우 서면회의 개최하여 부처 입법절차를 지원하도록 조정하고, 평가 안전보고서 작성방법 및 유형별 평가사례 공유를 통해 평가인력 역량 강화

- 현행법령 개선사업의 경우 법령평가 설명자료(검토개요, 검토의 구체적 내용, 검토결과 등)를 소관 부처와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일괄 개정 추진

\* '24년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법령소관 부서 담당자 직접 연락·협의 등으로 성과창출을 위한 협업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국세·산업 등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개선(Ⅱ-4①)

### □ 추진배경 (목적)

- '16.7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 도입 이전의 부처 소관 법령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미흡 등이 우려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근거 미흡, 개인정보 과다수집·이용 등

○ 현행 법령의 일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나

- 현행 법령의 규모가 상당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따른 각 부처 법령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평가인력의 한계를 감안,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법제처 법령통계('24.3.4. 기준) : 법령 5,303건(법률 1,620건, 대통령령 1,886건, 총리령 79건, 부령 1,349건 등), 자치법규 143,268건(조례 114,723건, 규칙 27,420건 등)

**< 현행법령 정비 추진 현황 >**

단계	분야	법령	결과
1단계('22)	보건·복지, 환경, 노동 등 15개	2,178개	90개 개선권고
2단계('23)	형사법, 민사법, 선거·정당 등 14개	1,671개	243개 개선권고
3단계('24)	내국세, 관세, 농업, 축산, 산림 등 15개	1,343개	추진예정
합계	전체법령 44개 분야	5,791개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침해소지를 발굴·분석하여 개선 추진

\* 내국세, 관세, 공업소유권, 에너지이용·광업, 농업, 축산, 산림, 수산 등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위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 근거 미비, 목적외 이용·제공 등

**□ 국세·산업 관련(15개 분야, 1,343개 법령)** ('23.1.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번	분야	개수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소계
1	문화·공보	66	72	51	189
2	내국세	24	25	21	70
3	관세	6	12	28	46
4	담배·인삼	3	3	2	8
5	농업	64	68	64	196
6	축산	18	17	18	53
7	산림	23	23	21	67
8	수산	29	33	38	100

9	공업규격·계량	9	9	8	26
10	공업소유권	8	16	12	36
11	에너지이용·광업	20	21	17	58
12	전기가스	19	19	14	52
13	육운·항공·관광	47	50	61	158
14	해운	64	72	64	200
15	외무	28	33	23	84
전체		428	473	442	1,343

○ 내국세, 관세, 공업소유권, 에너지이용·광업, 축산 등 15개 분야 1,343개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있는 침해법령 조문 및 서식 분석(1~3월)

- (개인정보 처리법령 실태조사) 각 분야의 법령 대비 개인정보 수반 법령의 비중, 가장 많이 처리되는 개인정보 유형 및 개인정보 처리 유형실태 등 조사

※ '23년 국세·산업 등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용역 결과 940개 중 8,053개 조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령 분석) 각 분야별 개인정보 수반 조문과 관련 서식 중 개인정보 처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된 조문과 서식에 대한 침해원인 분석\*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위배,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미준수, 고유식별 정보·민감정보의 처리근거 모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

○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권고안 마련(4~6월)

- (부처별 개선대상 법령분류) 전체 침해법령(조문 및 서식)을 부처별로 재분류하여 개선대상 법령 현황 정리 및 평가담당자별 배분(기재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20여개 부처 대상)

- (담당자 검토 및 부처 의견조회)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법령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조회 공문발송 및 현행법령 평가 설명자료 제공, 법령소관 부서 담당자와 직접 협의 추진

\* '22~'23년도에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로 침해법령 및 내용만을 간략하게 송부(엑셀 파일)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법무담당관실의 법령소관 부서 전달 누락 등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24년에는 법령평가의 구체적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법령소관 부서 담당자 직접 연락·협의 등으로 성과창출을 위한 협업 강화

- (소관부처 수용 법령안에 대한 개선안 마련) 침해요인 법령에 대한 불수용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연구진 및 평가자 재검토를 통한 검토보고서 작성

\* 소관부처 불수용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원안동의 법령으로 확정

○ **현행법령 개선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 등 추진(7~9월)**

- 소관부처 수용확정 법령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계획' 위원회 보고

○ **법제처,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법령개선 추진(10~12월)**

- 일괄개정이 가능한 법령에 대해서는 법제처 협업으로 법령 개정 추진 및 이외 법령은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추진
- 부처별 현행법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에 대한 공문요청으로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연구용역 결과 침해조문 및 서식 분석·검토	1월 ~ 3월	
	·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부처 협의		
2/4분기	·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부처 협의	~ 6월	
	·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5월 ~ 6월	
	· 개인정보 처리 침해조문에 대한 개선안 마련	6월	
3/4분기	·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계획' 보고	7월 ~ 8월	
	· 개인정보 침해요인 법령 개선권고		
4/4분기	· 법제처 협조 통한 법령 개선 추진	9월 ~	
	· 법제처 협조 통한 법령 개선 추진	10월 ~ 12월	
	· 이행상황 모니터링(소관부처 협조 공문 등)	12월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행법령 개선은 부처의 요청에 의한 평가가 아닌 제도개선 발굴 사항이므로 부처 대상 충분한 설명 필요
- 개선권고 조문에 대한 부처 의견조회 공문 발송 전 현행법령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추후 지속적인 개별 부처대상 협의 추진(각 부처 법무담당관실 및 법령 소관부서와 연계)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현행법령 개선사안에 대한 개별부처 대상 설명 및 회의 개최	연중

기대효과

- 법령상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권고의 이행실적	-	98%	100%	100%	위원회가 발굴한 법령 중 개선권고한 법령 수를 목표로 하되, '23년도 실질적인 100%를 감안하여 '24년에 100%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개선권고 법령 수 / 개선권고 발굴 법령 수 × 100%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② 침해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 입법지원(II-4-②)

추진배경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침해요인 평가를 거쳐야 하는바, 이는 의무적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 의무적 절차로 인한 입법 기간 지연 방지를 위하여 평가 요청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6항 : 법령안  
영향평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부분 법령안의 경우 통상 입법예고 기간 전 또는 후에 평가를  
요청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종료일이 임박하거나 종료된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 '23년 기관 평가요청 시기 : 입법예고 시작 전 10일 이내(37%), 시작 전 10일  
이상(12%), 시작 후 10일 이내(38%), 10일 이상 및 종료 후(13%)

- 법제처 심사 완료전\*까지 개선권고 사안에 대한 부처의 충분한  
이해 및 검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리기간 준수로  
부처 입법지원 및 실질적 수용률 제고 가능**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선 의견 반영결과는 법제처 심사 완료전까지 회신  
하도록 하고 있음(개선권고 내용 및 반영결과 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수요자는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신속한 평가처리를 통한 입법지원을 위해 **법령안 사전영향  
평가 처리기간의 체계적 관리 추진**

- 평가결과별 처리기간 추세 분석을 통해 처리기간 미준수 요인  
파악 및 요인별 문제점 관리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해당 조문에 대해 중앙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검토의견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 회신**

- 긴급한 정책추진 사항, 주요 사회이슈 등으로 인한 법령입안의 경우 입법예고 단축 기간에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검토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지원 및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
  - 담당자 업무 미숙, 부처사정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이 임박하거나 종료된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개정 이유, 법령안 이해 등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처리 추진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 추진
    - 소위 위원들에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송부 후 의견조회 기간 부여
  - 평가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평가담당자 역량 강화 및 평가 제도에 대한 관계기관 이해 증진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작성방법 및 유형별 평가사례 발굴 및 공유
    - 출범 후 총 개선권고 건수는 총 485건\*에 달하나, 평가 작성방법, 유형별로 사례 등이 통일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별 단편적·산발적 평가 수행으로 인한 일관성 저해 우려
- \* 연도별 개선권고 건수 : '20년(8~12월) 53건, '21년 164건, '22년 120건, '23년 148건
- 평가 기준별 주요 평가사례 도출 및 대내외 공유를 통하여 신속·일관성 있는 평가 추진 및 관계기관 이해 도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개인정보 침해평가 요청 소관부처 안건 검토	1 ~ 3월	
	침해평가 안건 검토 결과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1 ~ 3월	

	평가결과별 처리기간 및 부처 수용률 현황 점검	3월	
2/4분기	개인정보 침해평가 요청 소관부처 안건 검토	4 ~ 6월	
	침해평가 안건 검토 결과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4 ~ 6월	
	평가결과별 처리기간 및 부처 수용률 현황 점검	6월	
3/4분기	개인정보 침해평가 요청 소관부처 안건 검토	7 ~ 9월	
	침해평가 안건 검토 결과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7 ~ 9월	
	평가결과별 처리기간 및 부처 수용률 현황 점검	9월	
	침해요인 평가 작성방법 및 유형별 평가사례 발굴	9월	
4/4분기	개인정보 침해평가 요청 소관부처 안건 검토	10 ~ 12월	
	침해평가 안건 검토 결과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10 ~ 12월	
	침해요인 평가 작성방법 및 유형별 평가사례 공유	11월	
	평가결과별 처리기간 및 부처 수용률 현황 점검	12월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개선권고 법령에 대한 부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별부처 대상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한 회의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개선권고 안건에 대한 개별부처 대상 설명 및 회의 개최	연중
회의	소위 개최 시 관계부처 의견 소명기회 부여	연중

기대효과

- 입법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차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반 마련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법령 제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 준수율(%)	신규	신규	신규	80%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법령 제개정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율을 목표로 설정	기한 내 처리건수 / 전체 처리건수 × 100%	평가결과 통보 문서, 정부입법시스템 법령안 평가결과 완료함 등

(1) 주요 내용

□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이용 지속 확대

- 분쟁조정 제도 개선('23.9.15.)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실조사를 통한 신속한 2차 피해 보상 및 쉽고 빠른 분쟁조정제도 이용 안내 확대

**【 분쟁조정 관련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 ◆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권 부여(§45②)
- ◆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거부 간주' → '수락 간주'로 전환(§47)
- ◆ 분쟁조정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정수 확대(20명→30명)(§40②)
- ◆ 분쟁조정위 개선의견 보호위 및 중앙행정기관 통지 근거 마련(§제50조의2) 등

-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활성화 지속 추진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대상자 확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처리자, '24.3.15.)에 따라 제도의 체계적 운영방안 모색
  - 제도 변경·시행 초기의 사업자 혼란 방지, 자율적 이행 유도를 위하여 관리대상 파악, 제도 활성화, 이행 체계 마련 등 단계적 접근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분쟁조정 성립률	신규	신규	신규	43.8%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비율을 목표로 설정 ○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조정이 성립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21년 27.8%, '22년 46.6%, '23년 57.1%	○ (조정안에 대한 성립 건수 / 분쟁조정위의 조정 안 결정 건수) *100	○ 관련 통계 및 보고서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지도 및 공감대가 차츰 높아지고 있으며
  -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 데이터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 각급 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체계 및 역량 미흡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지속 증가
- 지능화·고도화된 신종 사이버 해킹기술 및 위협 요소 출현으로 개인정보 침해유형이 복잡·다양화하고 있어,
  - 피해구제 전문기구로서 분쟁조정위의 역할 강화 요구 증대
- 보호법 개정(24.3.15. 시행)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던 손해배상 의무가입 제도가 개인정보처리자 전반으로 확대
  - 의무가입 대상 추가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선 발생 우려

#### □ 갈등요인

- 민간 기업의 분쟁조정 참여가 의무화 되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조정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성립율이 하락할 가능성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대상자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이행 방법 등에 대한 혼란 우려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1]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이용 지속 확대(Ⅱ-5-①)

#### □ 추진배경 (목적)

- 분쟁조정 제도 개선('23.9.15.)\*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실조사를 통한 신속한 2차 피해 보상 및 쉽고 빠른 분쟁조정제도 이용 안내 확대 필요

#### 【 분쟁조정 관련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 ◆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권 부여(§45②)
- ◆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거부 간주' → '수락 간주'로 전환(§47)
- ◆ 분쟁조정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정수 확대(20명→30명)(§40②)
- ◆ 분쟁조정위 개선의견 보호위 및 중앙행정기관 통지 근거 마련(§제50조의2) 등

-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활성화 지속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정·투명한 분쟁조정 절차 확립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 분쟁조정 상대방에게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7일 이내에 송달, 자료 제출 요구 등 신속한 분쟁조정 착수
  - 필요최소한의 자료제출 요청,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 등 공정·투명성 확보
- 분쟁조정제도의 홍보 강화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통지 표준 양식에 분쟁조정 구제절차 안내 문구를 추가
  - 공공기관, 학회 등 강연 실시 및 각종 토론회 참여하여 분쟁조정 제도 홍보(분기별 1회)
  - 「2023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배포
  - 침해빈도 높은 사례 위주 콘텐츠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홍보 활동 강화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개인정보 유출통지 표준양식에 분쟁조정 절차 안내	'24.3월	
	· 분쟁조정제도 홍보	'24.3월	
2/4분기	· 분쟁조정제도 홍보 계획 수립·추진	'24.4월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24.6월	
	· 분쟁조정사례 등 홍보	연중	
3/4분기	· 분쟁조정 업무매뉴얼 개정	'24.9월	
	· 분쟁조정사례 등 홍보	연중	
4/4분기	· 분쟁조정사례 등 홍보	연중	
	· 분야별 개인정보 제도개선 의견 통보	'23.10~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분쟁조정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분쟁조정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개최	'24.4~5월
회의	· 제도개선 관계 부처 협의회	'24.10월

###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로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분쟁조정제도 개선노력	100%	1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조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세칙(안) 마련하여 분쟁위 상정</li> </ul> </li> <li>○ 분쟁조정관련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강화, 분기별 1회 이상 목표치로 설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세칙 개정(30%)</li> <li>○ 분쟁위 상정 학계·산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30%)</li> <li>○ 분쟁조정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등 현장 소통 진행(20%)</li> <li>- '개인정보처리자 유출통지 표준양식' 개정(2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문 등 각종 이행실적 자료</li> </ul>

## 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내실화(Ⅱ-5-②)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대상자가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인정보처리자, '24.3.15. 시행)
- 손해배상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무가입 대상을 파악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개정·배포
-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파악 및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와 개인정보처리 대상자 1만명 이상, 면제기준 등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구체화
- 분쟁조정 결정사항을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약관 반영, 책임보험 가입 자진 신고기간 설정 등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개정·배포	'23.3월	
2/4분기	정책연구용역 실시	'24.4~6월	
3/4분기	정책연구용역 실시	'24.7~9월	
4/4분기	정책연구용역 결과분석	'24.10~12월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설명회	'24.3월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정책연구과제 사업 예산 4천만원 사용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개정			신규	1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안내서 개정 횟수	안내서 개정 횟수	파일 데이터

## (1) 주요내용

## □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 조성

- 새로운 정보처리 환경인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에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보호법상 실효적인 위·수탁 감독체계 마련 등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 현행법상 위·수탁 규범과 클라우드서비스 현장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사업자 간 불명확한 법적 책임 문제 존재
  - 클라우드서비스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능 제공 현황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적용방안 마련
-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보호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조기 안착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 □ 온라인플랫폼의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

- 온라인플랫폼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처리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점검
  - 해킹 및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과 사고원인 분석 점검으로 개선 유도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온라인플랫폼 등 신기술 분야 제도개선(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2건	'24년도 신규지표로 기술·환경 변화가 빠른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실태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대표지표로, 분야별 제도 개선안 도출까지 어려움이 예상 되나,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신규 산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목표치를 2건으로 설정함	온라인플랫폼 등 신기술 분야 제도개선(안) 마련 건수	개선방안 보고 등 관련 보고서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요인

- (급변하는 생태계) 온라인 서비스 환경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  
하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기술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이 어려움
  - 온라인플랫폼은 서비스 확장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관심이  
많으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에는 관심이 적은 실정  
이고, 반면 시민단체 등은 빅테크 기업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지속 요구 중
  - 플랫폼과 모바일 중심으로 신규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슈퍼앱, 소셜로그인 등  
API 연동방식, 클라우드서비스 증가
- (정보주체 인지 어려움) 온라인플랫폼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삶의 편의성은 향상되나,
  - 클라우드 등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환경으로 인해서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생성·이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선제적 대응 요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이슈 사항에 대한 사전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필요

#### □ 갈등요인

- 온라인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등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플랫폼 환경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
-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개인정보 규제가 데이터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기술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제도 도입 요구
- 슈퍼앱, 소셜로그인 등 API 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 관리적 용이성은 높으나, 사업자 간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과 파기·보안 미흡 등으로 침해 우려 존재

#### □ 갈등관리계획

- 온라인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등 분야의 기술·운영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 도모
-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PbD 관점에서 법 적용방안을 기업과 함께 사전에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 집행체계 마련
-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으로 법 사각지대 해소 및 조사·처분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 조성(Ⅱ-6-①)

### □ 추진배경 (목적)

- 클라우드 등 급변하는 온라인플랫폼 환경과 신기술에 대응한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체제 확산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제도 도입 요구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새로운 정보처리 환경인 클라우드 분야에 민관협력 자율규제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보호법 상 실효적 위·수탁 감독체계 마련 등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 현행법 상 위·수탁 규범과 클라우드서비스 현장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사업자 간 불명확한 법적 책임 문제 존재
- 클라우드서비스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능 제공 현황분석 및 현장점검을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적용방안 마련
-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보호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조기 안착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 ※ 신청대상 및 절차, 검토 기간 및 반려 사유, 결과의 회신 및 효력, 결과 철회 등이 포함된 운영규정 마련
  - 신설된 제도 홍보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오프라인 홍보,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온라인 홍보 추진
  -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건에 대해 현황분석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호법 적용방안 마련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방향 수립	'24.1월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분석 용역 착수	'24.3월	
2/4분기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24.4월	
3/4분기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 결과 보고	'24.8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2.0 추진계획 마련	'24.9월	
4/4분기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공통사항 바탕 표준양식 마련	'24.12월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처리 보호조치 항목 도출	'24.12월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성과 분석	'24.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의견 청취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4.2월
설명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 기자설명회 개최	'24.4월
설명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제도 및 운영 절차 등 설명회 개최	'24.8월
간담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관계자 간담회 개최	'24.12월
회의	결과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 개최	연중

### □ 기대효과

- 민관협력 자율규제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플랫폼·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확산	신규	83.7 %	100 %	100%	'22~'23년 오픈마켓·주문배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이어 복잡한 정보처리 환경변화에 대응한 클라 우드 플랫폼 분야 서비스 환경분석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보호조치 항목 도출을 목표치로 설정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처리 보호조치 항목 도출 완료 여부	보호조치 항목 도출 보고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적기처리율	신규	신규	신규	80%	'24년도 신규지표로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보호법 적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지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신규 산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목표를 80%로 설정	사전적정성 검토제 적기처리율= (접수 후 60일 이내 적용방안 마련 건수 ÷전체 접수 건수(철회, 반려 건수 제외))×100%	신청서 및 적용방안 마련 보고자료 증빙 등

## ② 온라인플랫폼의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Ⅱ-6-②)

### □ 추진배경 (목적)

-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의 기반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플랫폼 분야) 플랫폼 분야의 기반이 되는 슈퍼앱, API 서비스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실시
  - (API 분야) 소셜로그인 API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안내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사전 실태점검
  - (슈퍼앱) 하나의 앱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절차, 신규서비스 추가 동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유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시정권고 미이행 시 조사·처분
- (클라우드 분야) '23.9월 보호법 개정으로 수탁사 처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 수준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 실태점검
  - 수탁사로서 이용사업자가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안전조치 의무 등 기능 제공 여부, 개인정보처리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점검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API 분야 사전 실태점검 착수	'24.6월	
	슈퍼앱 분야 사전 실태점검 착수	'24.6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사전 실태점검 착수	'24.6월	
3/4분기	API 분야 서면 및 현장점검	'24.9월	
	슈퍼앱 서면 및 현장점검	'24.9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서면 및 현장점검	'24.9월	

4/4분기	API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보고	'24.12월	
	슈퍼앱 사전실태 점검 결과보고	'24.12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사전실태 점검 결과보고	'24.12월	
	분야별 후속조치 등 환류 방안 마련	'24.12월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플랫폼 및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의견 청취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API 서비스 제공사업자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9월
현장방문	슈퍼앱 서비스 제공사업자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9월
현장방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업자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4.9월
회의	현장점검 분야별 전문가·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중
회의	결과도출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 개최	연중

□ 기대효과

- 온라인플랫폼 환경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선제적 실태점검 이행률	신규	신규	100%	100%	'23년도 신규지표로 '24년도 업무계획 및 조사업무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 분야와 선정된 대상에 대한 실태점검 이행 비율을 산정	개인정보 실태점검 이행률=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 수÷ 실태점검 계획 사업자 수)×100%	착수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 기본방향

### ◇ 주요내용

- 성과목표 1: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
- 성과목표 2: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성과목표 3: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성과목표 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 ◇ 추진배경

- 국정철학 구현 및 국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점검 및 관리,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및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필요
- 국정과제 이행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점검 및 입법추진 대책 필요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효율적인 평가체계 운영으로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성과평가의 책임성을 확보
- 위원회 정책의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위해 주요정책 전략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 등 전략적·체계적 정책홍보
-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선도 및 해외 진출 기업의 역량 제고

### ◇ 전략목표와 임무와의 관계

- 대·내외 역량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개인정보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대내외 협력 및 소통으로 국민의 정책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b>1</b>	<b>1</b>	<b>4</b>	<b>6</b>	<b>12</b>	<b>29</b>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b>Ⅲ.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b>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국민 인식도	
<b>1.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b>				개인정보위 주요업무 과제별 이행률	
	①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기능 강화			① 지시사항 정상 추진율 ② 재정 신속집행률	
	②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의 차질없는 이행			① 정부혁신 실행과제 정상 추진율 ② 국정과제 이행계획 실행율 ③ 2030자문단 정책제언	
	③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① 규제정비계획 이행률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달성률	
	④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① 정보화사업 관리 기능 구현 및 활용률 ②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율	
<b>2.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b>				① 위원회 운영 ② 직장 만족도	
	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 지원 강화			①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처리 ② 법령해석 지원 ③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④ 법령해석 연구반 운영	
	②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강화			① 위원회 운영 ② 위원회 운영 개선	
	③ 함께 일하고 싶은, 일 잘하는 위원회 조직 문화 구현			① 전문직위 전문관 보임률 ② 계획안사교류 직위 신설 ③ 간부급 유연근무 이용 평균비율 ④ 직장 만족도 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④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① 민원처리 만족도 ② 정보목록 공개율	
<b>3.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보도성과 ② SNS KPI 성과	
	① 언론 및 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체계적 소통 강화			① 언론 소통실적 ② 현장 소통실적	
	② 정책수요자 공감 유도·협업형 디지털 소통 강화			① SNS 쌍방향 소통 실적 ② 정책 홍보 디지털 소통 실적	
<b>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b>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			① 국외이전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②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	

### 전략목표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

#### (1) 주요내용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으로 위원회 임무달성 지원
  -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지원 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국민불편 해소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법령해석 심의·의결 현황 분석 및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정책 기획 및 집행의 정합성 확보 등 지원 강화
-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해 언론·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소통·협력 강화로 정책 도달 효과 제고
- 대외 협력 강화로 기관 이미지 및 국제 위상 제고
  -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국익 제고
  - 국내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제도 개선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2) 성과지표

#####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국민 인식도	-	-	84%	86%	94%	95%	'21, '22년에 비해 '23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대폭 상승하여 100%에 근접한 수치를 감안, '28년 95%로 목표치설정	총점수합계 / 응답자수 × 100%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등 일반국민 대상 인식조사)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분석 및 갈등요인

- 개인정보위의 중앙행정기관 출범 이후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기획·조정 역량 요구
  - 데이터 경제 시대에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행정역량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증대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측면에서 시민단체·산업계 등 이견 존재
  -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개방·공유의 요구에 맞서 개인정보 침해·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의견이 존재
- 그간 무의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내용이 어려워 콘텐츠 확산에 한계 존재
  -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정보위 차원의 규제 전환 시도(예시: 자율규제 활성화 등) 등 공유 필요

#### □ 갈등관리계획

- 국조실 · 기재부 · 국회 등 유관기관 및 개인정보 관련 학계·산업계 ·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 국정관리 및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예·결산 대응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계 인사로 구성된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통해,
  -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합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언론 및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기관장 인터뷰·기고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의의와 기대효과 등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
- 주요 국제기구 회의체 적극 참여 및 주요국 개인정보 기관과의 양자협의 추진 등을 통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글로벌 이슈와 각국의 정책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 간 정책협력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직운영 등 총괄기능 강화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지시사항 점검·관리 및 업무협력 강화
- 개인정보위 정부혁신·일하는 방식 개선
-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민·관 소통·협력 강화
- 개인정보위 예산 증액편성 및 효율적 집행 추진
- 원활한 국회 협조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 정부업무평가·부서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평가체계 구축

□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효율적 정보화 업무 추진

- 신기술·국민불편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강화
-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리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환경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개인정보위 주요업무 과제별 이행률	신규	신규	90%	100%	'24년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한 과제별 실행계획 연내 추진율	이행과제/실행 계획 × 100%	이행점검결과 보고서 등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감 상승
  - '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 이상이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실제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및 정책의 국민 참여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
-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가명정보활용 확대,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새로운 현안 발생으로 정책 기획·조정능력 요구
  - 이와 같은 외부환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발굴·기획 및 집행 역량 강화의 필요성 반영
- 개인정보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필요

#### □ 갈등요인

- 가명정보 결합·활용(전략1) 등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산업계 ·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의견 존재 가능

#### □ 갈등관리계획

- 주요정책의 공유와 협의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 안정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계의 의견수렴 창구 마련 및 범정부·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기능 강화(Ⅲ-1-①)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조정 기능을 수립·강화하고 정책수단 발굴 및 조직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기관의 임무와 전략 달성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지시사항 점검·관리 및 업무협력 강화
  - 개인정보 미래 아젠다 논의, 정책 품질 제고, 대국민 소통·홍보 강화를 위한 미래포럼 등 체계적 자문그룹 운영
  - 대통령·총리·기관장 지시사항 등 주요 정책방향 공유·전파,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보완을 통한 체계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DPG, 관계부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 외부 회의를 통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정책 추진
-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25년도 신규·증액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추진
- 원활한 국회 협조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 국회 상임위 등 주요정책 설명 및 정기회·임시회 대응, 주요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 실시
- 정부업무평가·부서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평가체계 구축
  - 정부업무평가와 부내 평가지표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외부평가 대응 지원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4~'28 중기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2월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2월	
	1분기 대통령 지시사항 점검	3월	
	'23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3월	
	2024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3월	
2/4분기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4월	
	2024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4월	
	2024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4월	
	2025년도 신규·중액 사업 발굴 및 예산 요구	5월	
	2024년도 개인정보위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	5월	
	2분기 대통령 지시사항 점검	6월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월	
3/4분기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8월	
	2025년도 신규·중액 사업 예산 반영 추진 및 예산안 제출	8월	
	3분기 대통령 지시사항 점검	9월	
4/4분기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10월	
	상임위 업무현안보고 및 국정감사 수감	10월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12월	
	4분기 대통령 지시사항 점검	12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개인정보위 정책 수행 부서 및 직원
- 개인정보위 정책분야 관련 국민, 기업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개인정보 관련 산업계 간담회	'24.2월
간담회	개인정보 관련 시민사회 간담회	'24.3월
간담회	개인정보 관련 학계 간담회	'24.3월
회의	개인정보 미래포럼	'24. 격월

□ 기대효과

- 국회 및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학계 및 산업계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및 조정으로 개인정보위 정책 집행에서의 효율성 제고
- 기획·조정 강화, 조직혁신 기반 마련으로 위원회 역량 제고 및 정책성과 극대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지시사항 정상 추진율(70%)	신규	신규	100%	100%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사항 정상 추진을 위하여 100%로 설정	정상추진 및 완료 건수 /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부위원장 지시사항 건수 × 100%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점검 보고서 위원장·부위원장 지시사항 처리 현황 보고서	
재정 신속집행률(30%)	신규	신규	신규	80%	'24년 재정신속집행을 위하여 개정신속집행 대상 사업에 대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80%로 설정	상반기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1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②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의 차질없는 이행(Ⅲ-1-②)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위 소관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국정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 민생현장 소통 강화 등 '24년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소 직원 혁신문화 내재화 추진

-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위원회 주요사업을 혁신실행과제로 선정, 「2024년 개인정보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 주기적 점검
- 조직문화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발굴, 위원회 내부 혁신방안 마련
- 교육·학습활동 장려, 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직원 혁신 역량 강화 지원

#### ○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정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시관리,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역할 강화 지원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30 자문단 발대식	1월	
	'24년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3월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3월	
	2030 자문단 전체회의	3월	
2/4분기	'24년 국정과제 1분기 이행사항 점검	4월	
	개인정보위 혁신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5월	
	2030 자문단 전체회의	5월	
3/4분기	'24년 국정과제 2분기 이행사항 점검	7월	
	정부혁신 실행계획 이행상황(상반기) 점검	7월	
	2030 자문단 전체회의	7월	
4/4분기	정부혁신 실행계획 이행상황(3분기) 점검	10월	
	'24년 국정과제 3분기 이행사항 점검	10월	
	2030 자문단 정책 성과 공유회 개최	12월	
	개인정보위 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12월	
	정부혁신 실행계획 이행상황 최종점검	12월	
	'24년 국정과제 이행사항 최종 점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단기) 개인정보위 정책 수행 부서 및 직원
- (장기) 개인정보위 정책분야 관련 국민, 기업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 수립 관련 회의	'24.3월
회의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24.3월
회의	국정과제 이행사항 점검 회의	매 분기

기대효과

- 개인정보위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기획·조정 강화, 조직혁신 기반 마련으로 위원회 역량 제고 및 정책성과 극대화
-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정부혁신 실행과제 정상 추진율(40%)	-	100 %	100 %	100%	과거 실적이 모두 100%인 점, 정부혁신 실행과제는 개인정보위 주요과제로 적극이행이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24년도 100%로 설정	정상추진 과제수/혁신과제 수 × 100%	혁신과제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결재문서, 보고서, 보도자료 등
국정과제 이행계획 실행률(40%)	신규	신규	신규	95%	정책환경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95%를 목표치로 설정	국정과제 이행 실적 / 국정과제 이행 계획 × 100%	국정관리 시스템
2030자문단 활성화(20%)	신규	신규	신규	100%	효과적인 2030 자문단 활동을 위해 자문단의 정책 제언 발굴 건수(10건)를 목표치로 설정	자문단 정책제언 수 / 목표수(10건) × 100%	2030 자문단 개최 결과보고서

### ③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Ⅲ-1-③)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수요자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및 국민 불편·부담 해소
- 규정과 선례를 뛰어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정보 분야 적극행정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 개인정보 규제혁신 추진 >

- 규제정비과제가 적시에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간담회·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외부 건의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규제샌드박스, 타부처 규제개선 건의, 규제혁신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 신속 처리
- 제·개정 법령 규제심사 및 일몰규제 개선을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합리적인 규제 신설·강화 지원

##### < 위원회 적극행정 활성화 >

- 적극행정 추진 사례 선정 관리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위원회 주요성과로 선정·관리하여 부서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발시 가산점 부여
  - 적극행정 기본·심화 교육,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상·하반기 각 3명)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희망부서 전보, 교육우선선발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정비계획 수립	1월	
	적극행정 유공포상 후보자 추천	2월	
	규제별 개인정보위 간담회 등 의견수렴 현황파악(1분기)	3월	
2/4분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심사 등)	4월	
	적극행정 기본교육	4월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4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5월	인사처 지침 통보 후
	규제별 개인정보위 간담회 등 의견수렴 현황파악(2분기)	6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6월	
3/4분기	적극행정 심화교육	9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9월	
	규제별 개인정보위 간담회 등 의견수렴 현황파악(3분기)	9월	
4/4분기	규제혁신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11~12월	
	규제별 개인정보위 간담회 등 의견수렴 현황파악(4분기)	11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시행령 개정 등)	12월	
	적극행정 정부업무평가 실적 제출	11~12월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 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위한 회의·간담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 등 의견 수렴	4월, 12월
회의	'24년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실행계획(안) 의견수렴	5월
회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 회의 개최	6월
의견수렴	규제별 개인정보위 간담회 등 의견수렴 현황파악	분기별

□ 기대효과

-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신산업 활성화, 기업 활력 제고 등 디지털 시대 경제 활성화 견인
-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규제정비계획 이행률 (60%)	신규	신규	100%	100%	연도별 수립된 규제개혁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23년과 같은 100% 목표 유지	'24년 규제정비건수* / 목표건수(9건) x100%	관련 문서 확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달성률 (40%)	신규	신규	신규	100%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목표 대비 달성률을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 * '24.4월~10월간(7개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매월 1건 이상 발굴 - 주요업무 추진성과,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국민체감도 등을 고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건수/ 목표건수(7건) x100%	부서별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카드

#### 4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Ⅲ-1-④)

##### □ 추진배경 (목적)

-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보안 역량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 개인정보 관련 대국민 서비스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사업 진척도 관리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한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정기적 품질점검·오류개선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
  -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직원 인식 함양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훈련,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분석, DDoS 대응 훈련 등을 통한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 점검
  - 점검을 통해 발견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 마련
-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
-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정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사업 진척도를 관리하는 등 정보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월	
2/4분기	정보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체계 계획 마련	4월	
	정보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장애처리	5월~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실시	5월	
3/4분기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7월	
	해킹메일 대응 훈련,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진행	7월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8월	
	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교육 실시	8월	
4/4분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구축	10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11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내부 직원, 시스템 담당자, 서비스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추진을 위한 시스템 담당자 회의	4월
벤치마킹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기관 벤치마킹	7월
의견수렴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8월
회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	10월

### □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규 서비스 적용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업무담당자의 정보보안 수칙 생활화 등을 통한 정보보안 사고 예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 향상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정보화사업 관리 기능 구현 및 활용률(50%)	신규	신규	신규	100%	- 정보화사업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실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관리 추진	(활용 기능 건수 / 구현 기능 건수) × 100%	- 정보화사업 관리 기능 구현 및 활용된 기능 증빙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율(50%)	신규	신규	신규	100%	- 위원회 정보시스템 대상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조치 취약점 건수 / 발견 취약점 건수) × 100%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결과

## (1)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 지원 및 대응역량 강화

- 법령해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령해석 공유회의 정례화
- 국민생활 밀접사항 및 중요 해석례 등을 표준 해석례로 발간
- 해석례 교육,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업무 담당자 이해도 제고

## □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 연간 의사 일정을 확정 후 공유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
- 소위 위원 정기 교체 등 소위 운영방식 정례화

## □ 함께 일하고 싶은, 일 잘하는 위원회 조직 문화 구현

-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범 부처 간 협업 여건 조성
-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 여건 조성 및 직원의 퇴직지원 강화

## □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
- 신속하고 충실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위원회 운영	신규	신규	신규	100%	○ '24년 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전체회의 개최 목표 건수(20회)를 설정	○ 개최실적/개최목 표(20회)× 100	개최 계획, 공문 등
직장 만족도	신규	신규	신규	70점	○ 한국행정연구원 발간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근무환경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2를 기록(약 60점), 해당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목표치 설정	○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1점) - 불만족(2점) - 보통(3점) - 만족(4점) - 매우 만족(5점))	직원 대상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 (12월)

###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로서의 역할 확립,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갈등과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일원화된 법령해석 필요
  - 최근 AI, Chat GPT등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증가
-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와 보상을 강조하는 성과 기반의 각종 인사제도 신설·강화
- 공공기관,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증가 등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인한 관련 민원 증가

#### □ 갈등요인

- 개인정보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과 일선 현장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법해석으로 갈등 존재 가능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인사 제도 운영상 주관 개입 가능성과 인사에 관한 직원 소통 기회 부족
- 개인정보 처리를 둘러싼 이용자와 정보주체 간 첨예한 이해 대립

#### □ 갈등관리계획

- 중요 법령해석 사례 중심의 법령해석 표준화 및 소통 강화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중요 해석례 등을 공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지자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업무 능률성 향상
- 각종 인사 관련 심사·평가 시 실질적 성과 기반 중심의 평가 및 동료평가 실시로 객관성 확보
- 직급별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전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여 각종 인사 심사·평가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관계된 갈등이나 의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통해 국민 대응성 향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 지원(Ⅲ-2-①)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 관심도 향상과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복합적 질의에 따른 법령해석 난이도 증가
- 법 개정,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법 해석 변경, 다양한 법령해석 요청방식\* 등으로 인해 해석의 일관성·통일성 필요
  - \*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기관질의, 심의·의결 신청 등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법령해석 지원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령해석 적절성 검토체계 내실화
  - 법령해석 공유회의 정례화(주1회 이상 개최)로 민원 및 기관질의 관련 법령해석의 일관성 확보
  - 사무처 자체 검토사항과 1소위 검토사항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 표준 해석례 마련
  - 국민생활 밀접사항 및 중요 해석례 등을 표준 해석례로 발간 일반국민에게 배포
  -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전 모음집을 온라인 등으로 발간·배포 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제고
- 해석례 공유 및 보완 등을 위한 소통 강화
  - 우리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표준 해석례를 교육하고, 교육내용을 개인정보 포탈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
  - 지자체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법령해석 지원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법령해석 공유회의 정례화	연중	1~12월
	· 1소위 심의·의결 및 기관질의 처리	연중	1~12월
	·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 발간	3월	-
2/4분기	· 법령해석 검토체계 구분기준 개선	5월	-
	· 1소위 심의·의결 및 기관질의 처리	연중	1~12월
	· 자치단체 등 대상 법령해석 현장지원	6월	-
	· 2024 개인정보 표준 해석례 직원교육	6월	-
3/4분기	· 개인정보 법령해석 공유 연구반 운영	연중	1~12월
	· 1소위 심의·의결 및 기관질의 처리	연중	1~12월
	· 2024 개인정보 표준 해석례 직원교육 및 자료 공개	8월	-
4/4분기	· 개인정보 법령해석 공유 연구반 운영	연중	1~12월
	· 1소위 심의·의결 및 기관질의 처리	연중	1~12월
	· 2024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간	12월	-
	· 2024 개인정보 표준 해석례 직원교육	12월	-
	· 자치단체 등 대상 법령해석 현장지원	12월	-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 수혜자

- 전 국민 및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 모두 포함)

#### ○ 이해관계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대상 사업자 및 단체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 위원회 법령해석 내용이나 기준을 민·관과 공유

- 지자체 등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24년 상반기 개인정보 법령해석 현장 설명회	'24.6월
현장방문	'24년 하반기 개인정보 법령해석 현장 설명회	'24.12월

□ 기대효과

- 국민신문고·의결례 법령해석 사례 일반화 및 분석을 통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정립
- 기존 해석례가 없거나 동일·유사한 사안임에도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법 해석 사례를 연구·공유하여 답변체계의 일관성 유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개인정보 법령해석 처리 (30%)	신규	신규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해석 목표 달성율</li> <li>- '23년 법령해석 실적 308건 대비 목표치 약 5% 상향하여 323건을 달성 목표로 설정</li> <li>- '24년 기관질의, 심의의결, 법령해석 현장지원, 자체발굴 해석 사례 등 실적 반영</li> <li>* 기관질의(11월 말 접수 기준), 심의의결(10월 말 접수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해석 목표 달성율(실적건수 / 목표건수(323건) × 100%)</li> </ul>	법령해석 현황관리표, 공문, 보고서 등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제고 (10%)	신규	신규	신규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li> <li>- 전년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67%) 대비 약 1% 상향하여 만족도 68%를 목표로 설정</li> <li>* 위원회 전체 만족도 : 6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 점수</li> </ul>	국민신문고 운영통계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 (30%)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해석집 반기별 1회 발간을 목표치로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간실적/발간 목표(2건)× 100%</li> </ul>	공문, 보고서 등
법령해석 연구반 운영 (30%)	신규	신규	신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령해석 공유 연구반 주1회 운영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실적/운영 목표(주1회)× 100%</li> </ul>	공문, 보고서 등

## ②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강화(Ⅲ-2-②)

### □ 추진배경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완료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효율적 회의 진행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위원회 운영 내실화
  - 효율적인 전체회의 운영을 위해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의사 일정을 미리 확정하여 위원·직원 등 공유
  - 회의 전, 중, 후 위원이 조치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위원 업무 매뉴얼 마련 배포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
- 소위 운영방식 정례화
  - 소위 위원장 1명을 포함, 소위별 위원을 3명으로 구성하되, 매 6개월을 주기로 교체 정례화
- 위원 안전검토비 현실화
  - 심도있는 검토 필요 안전 증가 및 타위원회 안전 검토비 수준을 검토하여 검토수당 내실화(4월)
- 위원회 심의·의결 전문성 강화
  - 주요 현안 및 동향 공유를 위한 정기 위원 간담회 운영(분기별)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연중	1~12월
	· 위원 매뉴얼 마련 배포	3월	-
	· 소위 운영방식 정례화	3월	-
2/4분기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연중	1~12월
	· 위원 안전 검토비 현실화	4월	-
	· 위원 현안 공유 간담회	6월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6월	-
3/4분기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연중	1~12월
	· 위원 현안 공유 간담회	9월	-
4/4분기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연중	1~12월
	· 위원 현안 공유 간담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및 개인정보처리자(공공·민간 모두 포함)

○ 이해관계자

- 보호위원회 직원 및 위원

기대효과

○ 위원회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체계적 의사 운영 관리

○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표준화된 계획 마련으로 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위원회 운영(50%)	신규	신규	신규	80%	○ '24년 위원회 연간 운영 등 위원 만족도 조사(연 1회 실시) - 의사진행 원활, 회의자료 적시 제공 등 만족도 항목 반영	○ 위원 만족도 (100점 기준) (위원 만족도 점수 평균/100)×100%	공문, 결과 자료 등
위원회 운영 개선(50%)	신규	신규	신규	5건	○ 위원·직원 등의 위원회 운영 개선 요구 발굴·반영(수시·연중)	○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건수	공문, 보고서 등

### ③ 함께 일하고 싶은, 일 잘하는 위원회 조직 문화 구현(Ⅲ-2-③)

#### □ 추진배경 (목적)

-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범 부처 간 협업 여건 조성 및 직원들의 전문 역량 강화
-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 여건 조성 및 직원의 소 생애를 고려한 퇴직지원 강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정·신뢰 인사) 각종 인사 관련 심사·평가 시 실질적 성과 기반 중심의 평가 및 동료평가 실시로 객관성 확보
  - 직급별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전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여 각종 인사 심사·평가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 업무 유공자에 대한 위원장 시상 등 우수직원 대상 인센티브 부여
- (전문성 강화) 전문직위 전문관 정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 전담 기관으로 역량 함양을 위한 특화된 직무교육 실시
- (범부처 소통·협업틀 구축) 부처 간 전문성 공유·활용 등을 위한 과장급 전략직위 지정·교류 및 담당급 계획인사 교류 직위 신설
- (근무여건 개선) 연가·유연근무 등 적극 장려 및 근무공간 개선으로 조직 활력 제고
  - 부서장 성과평가 시 유연근무 활용실적 비중 강화, 관리자급 유연근무·연가 실적 관리로 자유로운 활용 분위기 조성
  - 위원회 조사 업무 수행 편의 및 보안성을 고려한 조사면담실을 설치하고, 회의실·휴게공간을 확충하여 업무 효율 향상 도모
- (출산직원·퇴직자 지원) 인사혁신처 퇴직자 사회공헌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퇴직자 노하우 활용 프로그램 도입·운영, 둘째·셋째 출산직원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직원 고충상담 (수시)	수시	
	· 과장급 계획인사교류 직위 신설	2월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3월	
	· 성과 평가를 위한 동료평가 실시	3월	
	· 2023년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및 2024년 추진방향 수립	3월	
	· 2024년 개인정보 아카데미 추진계획 수립	3월	
	· 2024년 성과급 심사위원회	3월	
2/4분기	· 개인정보 아카데미 교육 실시(월1회, 총 8회)	연중	
	· 복무 관련 성과지표 정비	4월	
	· 상반기 직급별 간담회	4~5월	
	· 2024년 위원회 근무혁신 제도 수립	5월	
	· 전문직위 전문관 일제정비 완료	6월	
	· 조사면담실·회의실·휴게실 조성 완료	6월	
3/4분기	· '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	7월	
	· 신입관리자과정 대상 정부부처 설명회 참석	8~9월	
	· 개인정보보호 유공 선정	9월	
4/4분기	· 하반기 직급별 간담회	11월	
	· '24년 연가 및 유연근무 실적 마감	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간담회 개최) 운영지원과장 주재로 직급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인사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실시) 근무혁신 계획 수립 전, 신규 공무원 대상 제도설명 및 건의사항 접수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개최	직급별 대표 간담회	상반기
	직급별 대표 간담회	하반기
설문조사 실시	근무혁신 추진계획 관련 설문조사 실시	3~4월

### □ 기대효과

-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조직 활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전문직위 전문관 보임률 (20%)	신규	신규	신규	10명	'21~'23년 전문직위 지정 확대를 해 왔음 - '21년 15개 ➡ '22년 16개 ➡ '23년 17개 하지만 실제 17개 직위 중 9명만 전문관이 지정되어 전문직위 운영 취지에 미흡 전문직위 내 전문관 수를 늘려 실제적인 전문직위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23년 전문직위 17개 중 9명 운영에서 '24년 전문직위 17개 중 10명 운영으로 목표치 설정	전문직위 내 전문관 실제지정 명수	전문직위 지정 관련 공문
계획인사교류 직위 신설(20%)	신규	신규	신규	2개	'22~'23년 계획인사교류 직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22년 : 1개 직위, '23년 : 1개 직위	계획인사교류 직위 개수	인사발령 공문
간부급 유연근무 이용 평균비율(20%)	신규	신규	신규	72%	'22~'23년 간부급 연12회 이상 유연근무 이용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 '22년 : 72.4%, '23년 : 60%	12월 31일 기준 총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비율 (월평균 1회 이상)	표준인사시스템
직장 만족도 (30%)	신규	신규	신규	70점	연가 및 유연근무 활성화 운영·동호회 지원 등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 - '보통'~'만족'에 해당하는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 ※ 5점 척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 (매우 불만족(1점) - 불만족(2점) - 보통(3점) - 만족(4점) - 매우 만족(5점))	직장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로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전 직원 대상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12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10%)	신규	신규	신규	6명	인사혁신처의 '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24년 6명 운영 예정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모집인원	모집공고 및 선정결과

④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Ⅲ-2-④)

□ 추진배경 (목적)

-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
- 신속하고 충실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민원관리)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 및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관리
  - 민원 처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 민원행정 추진 계획 수립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 민원처리 우수직원 선정과 인센티브 부여로 민원처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제고
- (정보공개)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한 정보공개 역량 강화
  - 올바른 정보공개제도 이해를 위한 전 직원 직무교육
  - 정보공개 신속도 향상을 위한 처리기한 준수 모니터링
  - 정보목록 공개율 제고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기관평가 대응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청원심의위원회 개최	1월	
	전직원 대상 정보공개제도 직무교육 실시	2월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직원 선정·인센티브 부여	연중	
2/4분기	각 부서 업무담당자 정보공개 회의	6월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 추진계획 수립	6월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직원 선정·인센티브 부여	연중	
3/4분기	정보목록 공개율 전수조사 및 재점검 추진	8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8~9월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직원 선정·인센티브 부여	연중	
4/4분기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직원 선정·인센티브 부여	연중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응	연중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청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정보목록 공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청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24.1.
회의	정보공개 이행 관련 부서 담당자 회의	'24.6.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민원 관리와 정보공개 제도 운용을 통해 국민 신뢰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민원처리 만족도 (50%)	신규	신규	신규	62.6%	○ 3개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평균 61.6% 대비 1% 상향 ※ '21년(59.9%), '22년(61.1%), '23년(63.8%)	○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 만족도	국민신문고 시스템
정보목록 공개율 (50%)	신규	신규	신규	78%	○ '23년 정보목록 공개율 76%에서 2% 상향	○ (정보목록 공개 건수/생산문서 건수)×100	정보공개시스템, 온나라시스템

### (1) 주요 내용

#### □ 언론 및 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체계적 소통 강화

-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기관장(부기관장) 중심의 현장 소통 활동 강화로 개인정보 정책 이해도와 기관 신뢰도 제고
- 주요 정책 및 국민적 관심 이해가 필요한 핵심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소통을 통해 언론 및 정책수요자의 협력과 긍정적인 여론 형성 유도

#### □ 정책수요자 공감 유도·협업형 디지털 소통 강화

-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민 공감 유도
-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정책 도달 효과 제고

##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보도 성과 (50%)	10.8	14.3	15.3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성과값 목표 14.8점</li> <li>-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실질적 보도성과값 측정을 통해, 기관 정책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li> <li>-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개년 평균치(13.47점)보다 10% 상향한 14.8점을 '24년 목표치로 설정</li> <li>* '21년 10.8점</li> <li>'22년 14.3점</li> <li>'23년 15.3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성과값 =[(방송x3점+지면x2점+기타 통신·인터넷x1점)/총 보도자료 배포건수]</li> <li>* 방송(3점), 지면(2점), 기타 통신·인터넷(1점) 등 보도 유형별 가중치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 실적 자료</li> </ul>
SNS KPI 성과 (50%)	407,585	1,274,117	1,422,739	1,138,2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KPI 총합 목표 1,138,295점</li> <li>- 주요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KPI(6개)를 통해 대 국민 디지털소통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li> <li>-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개년 평균치(1,034,814)보다 10% 상향한 1,138,295점을 '24년 목표치로 설정</li> <li>* '21년 407,585</li> <li>'22년 1,274,117</li> <li>'23년 1,422,73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I 총합 = 당해 (유튜브) 구독자 증가, 총 조회수 + (페이스북) 팔로워 증가, 콘텐츠 도달수 + (블로그) 순방문자수, 조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SNS KPI 자료</li> </ul>

### (3) 외부환경요인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요인

- AI, 생체인식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기술·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과 다른 양상의 개인정보 침해 및 활용 이슈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높아진 반면,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 갈등관리계획

- AI 등 데이터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다양화에 대응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인정보 정책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관장 언론 인터뷰, 기고 및 출입기자단 정책 설명회 등 적극 추진
- 일상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정책,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미지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강화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① 언론 및 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체계적 소통 강화(Ⅲ-3-①)

#### □ 추진배경 (목적)

-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긍정적 여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 시대 핵심자원인 개인정보 제도·기술 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및 정책 추진력 도모
- 정책 대상자(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와 교류·의견수렴 등 현장에서 직접 소통을 확대하여 정책 수용성 제고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언론 소통)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과의 전략적 소통 활동으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긍정적 보도환경 조성
  - 주요 정책에 대한 인터뷰·기고 및 브리핑 추진, 출입기자단 설명회·간담회 및 주요 정책현장 취재 지원 등을 통해 언론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오보를 방지하고, 적극적·긍정적 보도를 유도
- (현장 소통) 다양한 정책 대상자와의 활발한 소통 활동으로 기관의 인지도와 정책의 수용성을 증진
  -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전문가와의 간담회, 기업·공공기관 현장 방문 등 국민 접점의 소통 활동을 추진하여, 위원회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수렴 및 국민적 관심을 환기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연간 홍보계획을 반영한 정책홍보 캘린더 제작	3월	
	· 주요 정책발표 브리핑 추진	1~3월	
	· 주요정책 중심 기관장 인터뷰·기고 등 전략홍보 추진	연중	
	· 언론 모니터링 및 문제보도 대응	연중	
	· 부서별 언론 사전취재동향 관리	연중	
	·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정책현장 방문 추진	1~3월	
2/4분기	· 주요정책 중심 기관장 인터뷰·기고 등 전략홍보 추진	연중	
	· 언론 모니터링 및 문제보도 대응	연중	
	· 부서별 언론 사전취재동향 관리	연중	
	· 출입기자단 정책 설명회·정책현장 방문 추진	4~6월	
3/4분기	· 주요정책 중심 기관장 인터뷰·기고 등 전략홍보 추진	연중	
	· 언론 모니터링 및 문제보도 대응	연중	
	· 부서별 언론 사전취재동향 관리	연중	
	· 출입기자단 정책 설명회·정책현장 방문 추진	7~9월	
4/4분기	· 주요정책 중심 기관장 인터뷰·기고 등 전략홍보 추진	연중	
	· 언론 모니터링 및 문제보도 대응	연중	
	· 부서별 언론 사전취재동향 관리	연중	
	· 출입기자단 정책 설명회·정책현장 방문 추진	10~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기술적·전문적 용어가 많은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출입기자단 대상 설명회·간담회 지속 실시
  - 부서 및 기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가 많은 주요 정책 중심 설명회 실시
  - 대언론 스킨십 확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을 위해 주요 매체 출입기자들과 위원회 간부들 간 오·만찬 간담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정책 설명회	· 출입기자단 대상 위원회 주요 정책 설명회 실시	연중
언론 간담회	· 주요 매체 출입기자들과 위원회 간부들 간 언론 간담회 추진	연중

□ 기대효과

-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소통 활동과 홍보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 향상
- 긍정적 여론 형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문화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언론 소통실적 (50%)	26	17	53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언론 소통실적 목표 35건</b></li> <li>• 적극적인 언론 소통 활동*을 통해 언론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li> <li>* 활동 유형: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브리핑, 언론 간담회 등</li> <li>•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개년 평균치 (32건)보다 10% 상향한 35건을 '24년 목표치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 소통실적 = 방송출연+인터뷰+기고+브리핑+언론간담회 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브리핑, 언론 간담회 등 언론 소통 활동 증빙자료</li> </ul>
현장 소통실적 (50%)	71	61	88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장 소통실적 목표 80건</b></li> <li>• 국민 접점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기관과 정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li> <li>* 활동 유형: 정책 현장 설명회(현장점검·의견청취 등), 전문가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강연회, 포럼, 세미나 등</li> <li>•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개년 평균치 (73건)보다 10% 상향한 80건을 '24년 목표치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소통실적 = 정책현장설명회+전문가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강연회+포럼+세미나 횟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현장 설명회(현장점검·의견청취 등), 전문가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강연회, 포럼, 세미나 등 현장 소통 활동 증빙자료</li> </ul>

## ② 정책수요자 공감 유도·협업형 디지털 소통 강화(Ⅲ-3-②)

### □ 추진배경 (목적)

- SNS의 보편화, 온라인 활동의 모바일화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화 도모
- 대학생 기자단 활용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SNS 반응(좋아요·댓글 등)을 적극 유도하여 쌍방향 소통 활성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감형 콘텐츠 개발·강화)** SNS 채널별 특성 및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정책 홍보효과 제고
  - **(신규 콘텐츠)** 주요정책 및 계기별 홍보주제와 연계하여 ‘월간 픽(PIPC)!, 개인정보 알아보카!’ 등 신규 콘텐츠 개발
  - **(영상 콘텐츠)** MZ세대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성향\*을 반영하여 숏폼영상, 웹드라마 시리즈 등 다양한 동영상 제작·확산
    - \* 키워드 검색으로 영상을 조회하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영상을 선호
- **(쌍방향 소통 강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활동을 확대하고, SNS 반응을 지속 관리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홍보 추진
  - **(국민 참여 확대)** 대학생 기자단 구성·운영,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참여형 홍보를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 \* 개인정보보호의 날(9월 30일)과 연계하여 매년 9~10월 중 개최하며,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소통 프로세스 다양화)** 대학생 기자단 및 위원회 SNS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등 소통 프로세스 다양화
- **(협업 홍보 강화)** 부처협업·KISA 협업 등 다양한 협업 홍보

## 추진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개인정보 관련 부처·KIS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홍보를 강화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보도자료 공동 배포 등 일관된 홍보 메시지 확산으로 홍보 효과성 제고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주요 정책이슈 디지털 소통·홍보 추진	연중	
	· '24년 업무계획 등 개인정보 주요정책 홍보	1~3월	
	· 새해/명절 계기 개인정보 보호 홍보	1~3월	
2/4분기	· 주요 정책이슈 디지털 소통·홍보 추진	연중	
	· 지우개서비스(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확대 홍보	연중	
	· 선거철/가정의달 계기 개인정보 보호 홍보	4~6월	
3/4분기	· 주요 정책이슈 디지털 소통·홍보 추진	연중	
	· 출범 4주년 계기 개인정보 보호 홍보	9월	
	·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계기 홍보	9~10월	
4/4분기	· 주요 정책이슈 디지털 소통·홍보 추진	연중	
	· 활용 우수사례 등 가명정보 관련 홍보	10~12월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AI, 기술포럼 등) 홍보	10~12월	

###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국민 의견의 정책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청년 간담회 실시
  - 위원회 SNS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및 콘텐츠 제작·채널 운영 반영으로 디지털소통 강화
  - 대학생 기자단, 2030 자문단 등 청년세대 중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추진

구분	내용	세부일정
국민 의견수렴	위원회 SNS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연중
청년 간담회	대학생 기자단 및 2030 자문단과 간담회 추진	연중

□ 기대효과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확산을 통해 핵심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정책 추동력 확보
- 정책 소비계층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쉽고 간명한 형태의 정책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SNS 쌍방향 소통 실적 (50%)	5,364	7,664	23,552	13,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쌍방향 소통실적 목표 13,412점</li> <li>·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개년 평균치 (12,193)보다 10% 상향한 13,412를 '24년 목표치로 설정</li> <li>* 홍보예산은 전년 대비 53.5% 감액 ('23년 660백만→'24년 307백만) 되어 원활한 홍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나, 소통실적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치보다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li> <li>* '21년 소통지수 총합(5,364) = 소극 반응(3,974)+적극 반응(1,390)</li> <li>'22년 소통지수 총합(7,664) = 소극 반응(6,049)+적극 반응(1,615)</li> <li>'23년 소통지수 총합(23,552) = 소극 반응(14,506)+적극 반응(9,046)</li> </ul>	○ SNS 쌍방향 소통 지수 =소극적 반응 (유튜브·페이스북 좋아요, 블로그 공감) + 적극적 반응 (유튜브·페이스북·블로그댓글) 지수	○ 주요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의 소통지수 총합(소극적 반응* , 적극적 반응** 합산) * 소극적 반응: 유튜브·페이스북 좋아요, 블로그 공감수 ** 적극적 반응: 유튜브·페이스북 블로그 댓글수
정책 홍보 디지털 소통 실적 (50%)	39	56	75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홍보 디지털 소통실적 목표 62건</li> <li>·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 3개년 평균치 (56.7건)보다 10% 상향한 62건을 '24년 목표치로 설정</li> <li>* 홍보예산은 전년 대비 53.5% 감액 ('23년 660백만→'24년 307백만) 되어 원활한 홍보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나, 소통실적 목표치는 최근 3개년 평균치보다 1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li> <li>- (동영상) 기관장(부기관장) 출연 영상 제작 및 SNS 게재</li> <li>- (카드뉴스 등 이미지형 콘텐츠) 기관장(부기관장) 현장 소통 콘텐츠 제작 및 SNS 게재</li> <li>* '21년: 동영상(5건)+카드뉴스(34건)</li> <li>'22년: 동영상(6건)+카드뉴스(50건)</li> <li>'23년: 동영상(10건)+카드뉴스(65건)</li> </ul>	○ 정책 홍보 디지털 소통 횟수 = 기관장(부기관장) 출연 동영상 제작 및 SNS 게재 횟수+ 이미지 콘텐츠(카드뉴스 등) 제작 및 SNS 게재 횟수	○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디지털 소통 실적 자료

성과목표Ⅲ-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

-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국익 제고
-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 총회 개최('25년 서울) 홍보 기반 마련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관의 위상 제고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

- 국내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제도 개선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등성 인정제도, 국제인증제도(CBPR)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제도 운영 활성화
- 국내 개인정보처리자의 국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신규	신규	신규	8건	○ 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위상 제고 및 주요 국제협의체·개인정보 감독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3년 산출 실적치(7회) 대비 10% 상향한 목표치 설정	○ 대외 개인정보 정책·처분사례 발표* 및 유관기관 면담** * 기관장(장 차관급)의 GPA, APPA, APEC CBPR 등 주요 국제협의체 회의 발표(대면, 화상, 전화 포함) ** 기관장(장 차관급)의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기구, 유관기관 등과의 면담(대면, 화상, 전화 포함)	○ 결과보고서 또는 보도자료

###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국의 규제수준 상이에 따른 통상마찰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정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공조·협력체계 강화 필요
- 국가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차이, 신유형(클라우드 등) 국외 이전에 대한 기존 국외이전 법령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개인정보처리자의 국외 이전 애로 발생

#### □ 갈등관리계획

- 주요 국제기구 회의체 적극 참여 및 주요국 개인정보 기관과 양자협의 추진 등을 통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글로벌 이슈와 각국의 정책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간 정책 협력 강화
- 글로벌 개인정보 법제 동향 및 새로운 국외 이전 유형을 반영하여 국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령 현행화 필요
  - 한편 인증 및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확보 추진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1]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Ⅲ-4-①)

#### □ 추진배경(목적)

- 국제사회 주요국 감독기구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국제협약체에서 선진정책과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등 데이터 경제 주도권 확보 필요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 국제 거버넌스 및 규범 주도를 통한 리더십 강화
  - 국제협약체(OECD, APEC, APPA\*, GPA 등)에서 법제개선 및 처분 사례 등 선도사례 공유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아태지역 감독기구 간 회의체로 12개국 20개 기관 가입
  - 개인정보보호 관련 외국 정부·국제기구·국제협약체 등과 양자 및 다자회의 적극 참여
-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약체 개최 홍보 기반 마련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및 동영상 제작, AI시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 논의 주도
    - \* GPA(Global Privacy Assembly)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회의체로 92개국 140개 기관 가입

###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GPA, APPA, GPEN 등 워킹그룹 화상회의 참석	1월~3월	
	· AP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제61차 포럼 의제안 논의 등	1월~3월	
	· G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24년 총회 의제안 논의 등	1월~3월	
	· 프랑스 CNIL과 업무협약 체결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1월~3월	

2/4분기	· IAPP Global Privacy Summit 참석	4월	
	· GPA, APPA, GPEN 등 워킹그룹 화상회의 참석	4월~6월	
	· AP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제61차 포럼 의제안 논의 등	4월~6월	
	· G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24년 총회 의제안 논의 등	4월~6월	
	· 프랑스 CNIL과 업무협약 체결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4월~6월	
	· 24년 제61차 APPA 포럼 참석	6월	
	· 기술전문연구그룹(Berlin Group) 제73차 정기회의 참석	6월	
3/4분기	· 2024년 AI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7월~9월	
	· GPA, APPA, GPEN 등 워킹그룹 화상회의 참석	7월~9월	
	· AP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24년 제46차 총회 의제안 논의 등	7월~9월	
	· AP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제62차 포럼 의제안 논의 등	7월~9월	
	· 프랑스 CNIL과 업무협약 체결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7월~9월	
4/4분기	· GPA, APPA, GPEN 등 워킹그룹 화상회의 참석	10월~12월	
	· APPA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10월~12월	
	· 프랑스 CNIL과 업무협약 체결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10월~12월	
	· 2025년 GPA 정기총회 개최 홍보 웹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	10월~12월	
	· 24년 제46차 GPA 총회 참석	10월	
	· 24년 제62차 APPA 포럼 참석	12월	
	· 기술전문연구그룹(Berlin Group) 제74차 정기회의 참석	12월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IAPP Global Privacy Summit 참석	'24.4월
회의	제46차 GPA 총회 참석	'24.10월
회의	제62차 APPA 포럼 참석	'24.12월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 해외 감독기구 등
- 이해관계자: 국내외 개인정보처리자, 해외 개인정보 관련 규제기관 등

기대효과

-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 및 양다자간 협력을 주도하고, GPA·APPA 등 개인정보 국제협의체를 선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 총회 개최 홍보기반 마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 강화( I -1-일반재정)				
①	개인정보보호 강화(1031)	일반회계	15.2 (91.6)	14.6 (95.7)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305)		15.2	1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신규	신규	신규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범 이후 MOU 체결 건수(2건)를 감안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위해 주요 감독기구와 MOU 추가 체결 및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사업 발굴·수행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간 MOU 체결 건수 및 양·다자* 협력사업 발굴 또는 수행 건수</li> </ul> <p>* 국제협의회 공동결의안 발의·채택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보고서 또는 보도자료</li> </ul>

##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Ⅲ-4-②)

### □ 추진배경(목적)

- 국가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차이, 신유형(클라우드 등) 국외 이전에 대한 기존 국외이전 법령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애로 발생
- 글로벌 개인정보 법제 동향 및 타국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령 개선 검토 필요
- 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동등성 인정' 제도가 국외 이전 요건으로 신설('23.9월~)됨에 따라,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등을 통한 글로벌 상호 운용성 확보 추진
- 글로벌 CBPR 포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및 글로벌 CBPR 인증의 개시 등 국제 상호운용성 논의 확대

###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주요국 개인정보 보호법령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방안 마련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이행 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국외이전 전문위원회) 활성화
- 국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황 조사 및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선 컨설팅
-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검토 절차를 추진하여 '동등성 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 추진
-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21.12.~'24.12.)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EU 측과 협의하여 재검토 절차 추진

- EU 적정성 네트워크, CBPR 등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확대 추세에 따라 지속 대응
- 주요국 개인정보 법제 및 처분사례 등 국외동향 배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제 컴플라이언스 지원
- EU 등 국외 진출한 국내기업 대상으로 법제 설명회, 상담 등 현지 법령 준수 역량 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출범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국외 이전 분야 법령개정연구반 출범	3월~4월	
	공공기관 국외이전 현황 조사	3월	
	EU 동등성 검토 등을 위한 TF 구성·운영	3월~12월	
	EU 적정성 네트워크 고위급 회담 참석	3월	
2/4분기	주요국 국외 이전 분야 법령 조사·연구	4월~9월	
	법령 개정 연구반 정기 회의(월 1-2회)	4월~9월	
	EU 동등성 검토 등을 위한 한-EU 실무회의(월 1-2회)	4월~8월	
3/4분기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 리뷰 초안 협의	7월~9월	
	EU 동등성 검토보고서 초안 마련	8월~9월	
	EU 동등성 검토보고서 관련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평가	9월~11월	
4/4분기	개인정보 보호법 국외 이전 분야 법령개정안 마련	11월	
	공공기관 국외 이전 법령 개선안 마련	10월~12월	
	EU 동등성 검토보고서 관련 개인정보 정책 협의회 개최	11월~12월	
	EU 동등성 검토보고서 전체회의 심의·의결	12월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 리뷰 절차 완료	12월	
연중	디지털 통상협정(한-EU DPA, WTO JSI, 한-몽 EPA 등) 대응	수시	
	글로벌 CBPR 포럼 GFA 회의, 실무위원회, 워크숍 등 참석	수시	
	주요국 개인정보 법제 및 처분사례 등 국외동향 외부 배포	수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개인정보 정책 협의회(관계부처 회의) 개최	'24.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 해외진출 기업 등
- 이해관계자: 국내외 개인정보처리자 등

□ 기대효과

-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국가 간 상호운용 활성화 기여
- 글로벌 개인정보 법제 상호운용성 제고를 바탕으로 안전한 개인 정보 국외이전체계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개인정보보호 강화( I -1-1-일반재정)				
①	개인정보보호 강화(1031)	일반회계	15.2 (91.6)	14.6 (95.7)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305)		15.2	1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외이전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신규	신규	신규	90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목표 ※ 금년도 신설 지표로서 목표치 임의 설정 ※ '23.9월 개보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법령 개정 수요가 크지 않은 점 고려 필요 ① 금년도 3개 이슈 발굴 및 제도 개선 (75점) * 제도개선 과제 완료 건당 25점 x 3건 (*과제발굴 6점 + 연구반 운영 4점 + 개선안 마련 15점 = 25점) ②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수렴 다수 실시 (15점)	○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제도개선 의견 수렴 * 서면 3점/회 * 현장 간담회 9점/회 ○ 연구반 운영 : 4점/회 ○ 제도 개선 과제 발굴 : 6점/개 ○ 제도개선안 마련 : 15점/개	회의록, 메모 보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 가능한 기록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	신규	신규	신규	100%	○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 - 개정법에 신설된 동등성 인정 체계의 정착을 위해 다른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 평가 실시	○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 - 동등성 검토 추진계획 전체회의 보고(20%) + 한-EU 회의 개략(10%) + 검토의견 작성(30%) + 전문위원회 평가(20%) + 전체회의 의결(20%)	회의록, 메모 보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 가능한 기록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정비

### □ 과제 목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공포)에 따라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24.3.15. 시행되는 하위 시행령 규정 정비
  - \* ① '23.9.15.시행 : 이동형 영상정보 수집·활용 근거,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동의 제도 개선, 과징금 개편 등 / ② '24.3.15.시행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 ③ '25.3.15.內 시행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관계부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협조 필요

### □ 주요 내용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영 제44조의2~4)
  -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 및 설명 등 최소한의 권리 구제 수단 절차 마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영 제32조)
  -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 독립성 보장 준수사항 마련 등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영 제13조의2)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호수준 평가의 세부 절차를 마련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영 제48조의7)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대상 기준을 매출액 10억 원,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조정 등

-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영 제21조)**
  - 정기조사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매 2년 → 3년)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영 제31조제1항)**
  -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 국가명, 국외 이전 시 이전의 법적 근거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추가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총괄(규제 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보도자료 배포 등)
- **(자율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 요건 및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 공공기관 수준평가 세부 절차 규정 마련 등
- **(분쟁조정과)** 온라인에서 온·오프라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변경됨에 따른 합리적인 의무대상 범위 및 면제기준 마련 등
- **(조사총괄과)**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정기조사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점검 사례 등 현황 파악 등
- **(국제협력담당관)** 국외에서의 직접 수집, 국외 이전 시 이전의 법적 근거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1월초)
- 자체규제심사(~1월)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응(~1월말)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월초) 및 법제처 심사 대응(~2월말)
- 차관·국무회의 의결(~3월초), 안내서 마련 및 설명회(~3월말)

## 2. 합성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 □ 과제 목표

- AI 일상화에 대응하여 AI 학습 등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주요 기술인 합성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게 생성하여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활용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 주요 내용

- AI 학습 및 가명정보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안전한 데이터 처리·활용 생태계 조성
-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발
  - 개인정보 비식별성을 높이면서 AI 학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의 기준·절차·방법, 주의사항 등 마련
    - ※ 합성데이터 국내외 법·제도·기술 동향, 개인정보 관련 이슈 등 조사·분석
- 의료, 금융 등 주요 분야별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실사례 발굴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데이터안전정책과) 가명·익명 처리 실습,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합성데이터 활용 참조모델(5종) 개발 및 실증연구 추진
  - ①합성데이터 생성 절차 및 생성 알고리즘, ②유용성·안전성 검증 방법, ③주요 분야별(보건의료, 금융 등)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사례 등 개발
  - \* (신기술개인정보과 협업사항) 실증연구 후속조치로 합성데이터 생성 알고리즘, 유용성·안전성 검증 방법 등 주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 (신기술개인정보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 기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절차·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데이터안전정책과 협업사항) 가이드라인 개발과정에 있어 주요 내용 검증, 유관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검토, 실제 적용 시 예상 문제 분석 등 협조

## □ 추진계획

○ 합성데이터 생성 및 참조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데이터안전정책과, '23~'24)

○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추진(신기술개인정보과, '24)

### 3.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 과제 목표

-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 특히, 임상 의사들이 신약·치료법 개발을 위해 AI·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

#### □ 주요 내용

-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과의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 샌드박스 적용 추진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증특례 등 보호법 규제 적용예외 인정방안 검토\*

\* ① 가명정보 국외이전의 예외적 허용, ② DRB 등 적정성 심의절차 간소화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데이터안전정책과)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기타 규제 개선사항 발굴·개선
  - 실증특례 적용을 위한 상호 협의·부가조건 등 사전 조정
- (국제협력담당관) 가명정보 국외이전 관련 업계 애로 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선안 마련

#### □ 추진계획

- 규제 샌드박스 관련 관계기관 협의(3월)
- 보건의료 가명정보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사항 발굴 및 법·제도 정비(24.上~)

## 4.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이행점검 및 환류

### □ 과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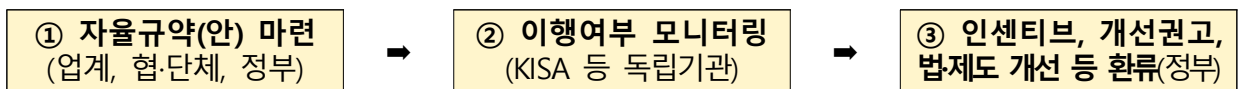
#### ○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특성에 맞는 실효적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

- 旣 제정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업자의 자율규약 이행력 확보

\* 오픈마켓, 셀러틀, 주문·배달, HR채용

- 성실이행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등 환류를 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지속가능성 제고

※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체계



### □ 주요 내용

#### ○ 오픈마켓·셀러틀·주문배달·HR채용 분야별 이행점검 실시

- 旣 제정된 4개 분야 자율규약을 토대로 마련된 자율점검표를 기준으로 협회·참여사가 자율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 결과를 이행점검
-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성실이행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감경,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 민관협력 자율규약 개정 및 연장 추진

- 규약 유효기간(2년) 만료 전 연장 여부 합의, 개정수요 검토 및 개정 추진

#### ○ 민관협력 자율규약 및 이행점검 결과 환류

- 자율규약 및 이행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개인정보 보호 역할·책임에 관한 표준양식 등 마련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자율보호정책과)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점검 및 개정 추진, 민관협력 자율규제 환류방안 협업
  - 이행점검 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검토, 분야별 점검보고서 작성 등 이행점검 전반에 관한 사항 추진
  - 규약 개정수요 파악·검토,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 규약 개정 추진
  - 민관협력 자율규약 및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환류 방안 협업
- (조사3팀) 결과보고서 등 활용한 환류 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 협업
  - 민관협력 자율규약 및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환류 방안\* 마련
    - \* 자율규약 4종 공통사항,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율규약 표준양식 마련
  -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점검(서면·현장), 자율규약 항목별 보호조치 수준 및 결과보고서 검토 등 협업
  - 민관협력 자율규약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보호조치 수준 협업

## □ 추진계획

- 주문·배달 분야 이행점검(1차년도, 13개 사) 실시(2~4월) 및 결과 발표
- 셀러툴 분야 참여사 확대(4월, 8개→11개 예정)
- HR채용 분야 이행점검(1차년도, 6개 사) 실시(5~7월) 및 결과 발표
- 오픈마켓 분야 이행점검(2차년도, 10개 사) 실시(8월~12월) 및 결과 발표
- 셀러툴 분야 이행점검(2차년도, 11개 사) 실시(9월~12월) 및 결과 발표
- 자율규약 4종 공통사항,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율규약 표준양식 마련 등 환류(12월)

## 5. AI 분야 제도(법령해석,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운영

### □ 과제 목표

- AI 모델·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처리 예정자)의 요청·문의 시,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및 보호법 적용 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

### □ 주요 내용

- AI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이슈 관련 사업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AI 관련 기술·서비스가 복잡·다양화함에 따라 AI 특성을 고려한 다수의 부서 간 공동 검토 추진
- 개인정보 이슈 관련 법령해석,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 추진

#### <사업자를 위한 안내사항 예시>

제도	법령해석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	신서비스로 한정 X	신제품·서비스 출시 전에만 신청 가능	신제품·서비스 출시 전에만 신청 가능
요청·검토 대상	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①실증특례: <b>현행법상 금지된 경우에도 기존규제 적용 없이 시험·검증 허용</b> (특례 유효기간은 최대 2년 → 안전성 입증+법령정비 시 정식 허용) ②임시허가: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③신속확인: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 시 '규제없음' 간주 * 보호법은 인·허가규정이 없어 내용상 법령해석과 유사하게 운영 중	보호법 적용 방안 마련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b>제재조치X</b>
처리기간	14일 이내 * 휴일 불산입	(실증특례) 90일 이내(자료보완기간 포함) (신속확인) 30일 이내	60일 이내 * 자료 보완 기간 불산입
특징	보호법 관련사항만 검토 가능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6개 他부처 규제 해당 여부와 함께 회신받을 수 있음	보호법 관련 사항만 검토 가능

## □ 부서간 협업 필요 사항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AI 관련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소관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및 검토
- (신기술개인정보과) AI 관련 영상정보·생체정보 등 신기술 분야 법령해석 및 검토,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접수·사실확인·신청인에 통지 등 제도 운영
- (데이터안전정책과) AI 관련 가명정보 처리·결합·안전 활용 분야 법령해석 및 검토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티팀) AI 관련 법령해석 및 검토 총괄, 제도 간 차이점 분석, 소관과 검토 및 배분, 사업자 대상 소통창구
  - ※ AI 분야 정부-민간 간 소통·협력의 구심점으로서 개인정보 규제를 함께 설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전담 창구로 신설('23.10월)
- (자율보호정책과) AI 관련 자율규제,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인증,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법령해석 및 검토
- (조사3팀) AI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건에 대한 접수·환경분석·보호법 적용방안 마련·위원회 상정·신청인에 통지·이행점검 등 제도 운영

## □ 추진계획

- AI 분야 관련 법령해석,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제도 운영 추진(상시)

##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 □ 과제 목표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 절차 인지도 제고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구제를 못받을 수 있음
  - 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알려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제도를 같이 알려 정보주체가 분쟁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
  - 현재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문에는 피해구제에 대한 안내는 없이 피해가 발생에 대한 신고 방법만 안내하고 있음
  - 이에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출통지문에 분쟁조정제도에 안내를 포함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조사총괄과)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예시를 개선하여 분쟁조정제도 안내 문구 포함
  - 개선된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을 개인정보포털 등에 게시 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도록 조치
- (분쟁조정과)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에 포함될 분쟁조정제도 안내 문안을 마련하여 제시

### □ 추진계획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개정 (24.3월)

## 7. 국내외 AI 사전실태 점검

### □ 과제 목표

- 초거대·생성형 AI의 급속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증대
  -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실태점검 및 취약점 개선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안의 조기 해소와 안전한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 주요 내용

- (대상) AI 활용 분야별 국내·외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자 12개社
  - (점검 중점) AI 서비스 분야별 처리되는 개인정보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 단계별(기획·수집·학습·서비스) 침해위험 정도 및 관리 방안
  - (점검 방법) 약관 및 처리방침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공개한 각종 AI 모델 관련 문서 등을 확인·검토하고, 자료요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학습데이터 현황 등 확인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글로벌 사업자는 글로벌 빅테크 대상 조사 노하우를 보유한 조사1과가 담당하고,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현장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정보통신 분야 사업자를 주로 조사하는 조사2과·3팀에서 담당

부서	소관 사업자	비고
조사1과	OpenAI, Google, MS 등 6개社	글로벌 사업자 담당 및 조사방향 검토 및 공유
조사2과·조사3팀	네이버, SKT, LG AI연구원 등 6개社	국내 사업자 대상 현장 조사 전담 추진

### □ 추진계획

- 사전 실태점검 추진 및 권고안 검토 : '24년 1분기
- 사전 실태점검 결과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24년 2분기 內

## 8.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점검

### □ 과제 목표

-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 및 개선 유도

### □ 주요 내용

-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이용·탈퇴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저해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처리실태 점검
  - 대상 : 오픈마켓 등 일반분야와 금융분야의 온라인 서비스
  - 점검 방법 : 서비스 가입·이용·탈퇴 과정 원격 점검 및 필요시 서면·현장 점검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23년에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추진한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양 부서간 협력하여 온라인 분야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점검 및 개선 유도
  - \* (조사1과) 온라인 보험 가입시 수집·이용 동의 등 다크패턴 조사 중
  - (조사2과) 주요 앱 대상 개인정보 다크패턴 현황점검 및 유형 정의
- (조사1과) 금융분야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점검
- (조사2과) SNS, 오픈마켓 등 일반분야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점검

### □ 추진계획

- 부서 간 점검 항목 및 점검 결과 등 공유로 실태점검 효과 제고

## 9.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개선(의원입법 지원기능 강화)

### □ 과제 목표

#### ○ 타부처 소관 의원입법\* 모니터링 강화

\*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률(↔정부입법)로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경우 소관부처는 10일 이상 관계 기관의 장 의견을 들어야 함(「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 법무감사담당관은 타부처의 요청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소관 부서에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나, 누락·미제출\* 발생

\* ①타부처에서 의견조회를 미 실시 ②소관부서를 미지정 또는 미확인하는 경우

- 의원입법 검토가 누락·지연될 경우 향후 시행령 등에 대한 침해 요인평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양 부서간 협업 필요

⇒ 침해평가과가 운영하는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의원입법 중 개인정보 관련 법안 검토의견 제출 누락 방지 추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의원입법 법령안의 개인정보 수반 여부·개인정보 처리 조문 및 주요내용 요약 제시 중(전 직원 접속 가능)

#### ○ 의원입법 의견조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

-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의원입법 검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문서 생산 최소화

\* 현재, 타부처 요청 공문과 의원입법안을 모두 첨부하여 전 부서에 통보 중

< 법무감사담당관 생산 문서 현황 >

연도	전체 생산문서(건)	타부처 의원입법 의견조회(건)	비중
2021	1,072	200	19%
2022	1,273	132	10%
2023	1,525	172	11%

## □ 주요 내용

### ○ 의원 입법 모니터링 절차 개선

- 기존에 활용하던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에 “관련 부서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토·확인한 이력 등” 기능 추가
- \* '24년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273백만원) 활용

#### « AI 침해평가 지원시스템 추가 기능 주요 내용 »

- ①의원입법 수집목록에 개인정보 수반 법령 소관부서(복수 가능) 지정
- ②배분받은 소관부서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 확인, 검토의견 입력
- ③의원입법 수집목록 화면에 해당부서, 접수 확인일, 최종 검토 완료일 표시

### ○ 의원 입법 검토 절차 개선방안 수립

-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의원입법 검토절차 (접수, 부서지정, 부서확인, 의견작성, 제출 등) 마련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 (침해평가과)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추진

- 검토부서 지정(복수 가능) 및 검토의견 입력, 검토일 표시 등 자동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원입법안 검토 지원 강화

### ○ (법무감사담당관) 메뉴 구성·제공 항목 등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AI 침해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의원입법 검토 절차 개선방안 수립

## □ 추진계획

- AI 시스템 기능 개선 시범 테스트(3월 중순) → 정식 오픈(3월 말)
- 의원입법 검토 절차 개선방안 수립(3월)
- AI 시스템 활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모니터링(3월말~)

## 10. 2030 자문단 청년정책 발굴 및 개선

### □ 과제 목표

- 청년층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친화적 개인정보 정책 과제 발굴 등 청년세대의 정책 효능감 제고 필요
- 청년세대 여론 수렴, 청년정책 발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등

### □ 주요 내용

- (전체 회의 운영) 청년보좌역이 주재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분과 회의에서 사전 논의를 거쳐 분과별 안건 상정
- (분과별 회의 운영) 분과장이 주재하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하여 현황파악과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개선 내용을 담은 상정안 마련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혁신기획담당관실) 2030 자문단 회의운영, 분과별 개인정보 정책연구 과제 발굴·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추진
- (과제해당부서) 2030 자문단 회의에서 발굴 된 과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발굴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발굴과제 소관 담당자를 정책매니저로 지정하여 과제 타당성 검토, 법령·제도·절차 등을 통해 정책개선 추진

### □ 추진계획

- 분과별 회의 운영(매월)
- 2030 자문단 전체회의 운영(격월)
- 정책발굴과제 연구 및 소통(수시)

## 11. 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예방 및 장애복구 체계 강화

### □ 과제 목표

- 개인정보포털 등의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국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강화

### □ 주요 내용

- (사전예방) 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해 각 서비스 담당 부서는 서비스 정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각 서비스 담당 부서	9시와 18시에 각 서비스 정상여부 점검(매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부하량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매주)

- (협조체계) 법무감사담당관실, 서비스 담당 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 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예방 및 장애복구를 위해 협업
- (즉시보고) 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 여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시 담당 부서장 및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
- (신속복구) 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시 법무감사담당관실, 서비스 담당 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 협업하여 신속히 복구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법무감사담당관실) 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예방 및 장애복구 총괄
  - 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예방 및 장애복구 체계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장애예방 활동 총괄 및 장애시 신속한 장애복구 추진
- (서비스 담당 부서\*) 각 서비스 담당 부서는 매일 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매주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 및 서비스 장애시 법무감사담당관실과 협력하여 장애복구

\* 서비스 담당 부서 : 대변인실, 국제협력담당관, 개인정보정책과, 자유훈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조사총괄과, 분쟁조정과

### □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서비스 점검 결과를 매월 업무포털에 공지(5월~)

## 12.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체계 정비

### □ 과제 목표

- 가이드라인·해설서 마련,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결정, 조사·처분, 기관질의 회신 및 국민신문고 답변 등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서 일관성·통일성 확보
  - \* 소관 업무 수행과정에서(규제샌드박스-민원, 기관질의 답변 간 등) 해석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서 협조필요
- 일관되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국민 이해도 증진 및 불필요한 갈등 예방

### □ 주요 내용

- 법령 해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법령해석체계 개선
  - 심사총괄담당관실 중심의 **법령해석 회의를 정례화**하고,
  - 관계 부서간 해석 불일치 문제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공동 해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회의** 개최를 통해 조율
  - \* 법령 제개정 등 환경에 따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사안, 가이드라인·해설서 등에 대강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 적용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공동해석 대상으로 하되,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체계화
- 표준 해석례 발간
  - 국민생활 밀접사항 및 중요 해석례 등을 **표준 해석례로 발간** 일반 국민에게 배포
- 해석례 공유·보완을 위한 소통 강화
  - 표준 해석례를 직원 및 일반국민과 공유하고 지자체 등 현장 설명회 실시 및 해석관련 소통 강화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심사총괄담당관) 법령 해석 총괄(해석 관련 이슈 공동논의체계 운영 등)
  - 위원회 상정안건 모니터링 등으로 쟁점 또는 정립되지 않은 법령해석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해석기준 마련
    - \* 필요시, 1소위 안건으로 상정 지원
- (법령해석 관련업무 소관과) 가이드라인·해설서 마련,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결정, 조사·처분 등 업무 수행 시,
  - 정립되지 않은 법령 해석 등과 관련하여 심사총괄담당관 등 관계 부서와 협의, 필요시 1소위 상정

## □ 추진계획

- 법령해석 회의 정례화(1월~연중)
- 업무 수행체계(안) 마련 (~5월)
- 법령 해석례 발간(6월, 12월)
- 1소위 운영(1월~연중)

## 13. 청년세대 참여형 협업 홍보 강화

### □ 과제 목표

-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기조(국정과제<sup>92</sup>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에 따라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홍보 활동에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주요 정책홍보 강화

### □ 주요 내용

- (정책 티타임 ‘프라이버티’) 위원회 주요정책 의제를 선정하여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원과 대학생 기자단(이하 기자단),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 함께 토론하는 정책 티타임 추진
  - 청년친화적 개인정보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및 청년세대 여론 수렴(기자단, 자문단)
  - 정책 티타임 취재 및 청년 눈높이 콘텐츠 제작(기자단)
- (협업 콘텐츠 ‘월간 픽(PIPC)!’) 부서 소개 및 소관 주요정책 소개 중심 부서장 인터뷰 진행 및 블로그 기사 등으로 콘텐츠화 추진
  - 정책 관리자(부서장) 직접 설명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기관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인터뷰 진행(자문단, 필요시 기자단 참여)
  - \* 인터뷰 대상 부서 협업 동시 진행
  - 현장 취재 및 청년 눈높이 콘텐츠 제작(기자단)

##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대변인실) 대학생 기자단 참여 및 콘텐츠 제작·홍보 협조
  - 주요정책 관련 청년 의견 제시, 인터뷰 참여, 현장 취재, 블로그 기사 및 영상·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 (혁신기획담당관실) 2030 자문단 참여 협조
  - 주요정책 관련 청년 의견 제시, 인터뷰 참여
  - ※ 세부 협업사항은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

## □ 추진계획

- 정책 티타임 프라이버티 실시(격월)
- 협업 콘텐츠 '월간 픽(PIPC)!' 제작(격월)
- 청년의 날 행사 공동 참여 및 콘텐츠 제작(9~10월)

##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 점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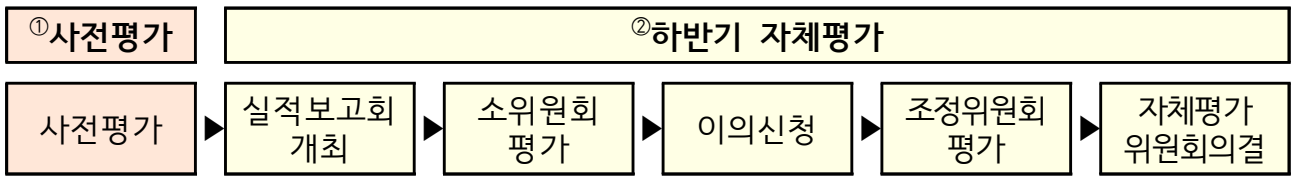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일정 이행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현황 및 전망 등
  - 추진과정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방안 강구 등을 통해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과성·책임성 강화

###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2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 점검내용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 \* 부진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조치 요청
- 점검절차 : 국관별 자체점검 후 자체평가 소위원회를 통한 외부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자체평가위 점검 ⇒ 점검결과 국조실 제출(정평위 보고) ⇒ e-IPSES 등록
- 점검주기 및 일정 : 분기별 점검

'24. 1분기	성과목표 및 지표, 평가대상 관리과제 선정
'24. 2분기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1차 중간점검, 5월)
'24. 3분기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점 마련(2·3차 중간점검, 7·10월)
'24. 4분기	과제별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 점검(평가) 체계



### ① 사전평가

- ㉠ (실적 보고서 작성) 부서별로 특정평가(주요정책부문) 보고서 서식 활용하여 11.30일 기준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 작성
- ㉡ (소위 사전평가) 특정평가 주요정책과제의 정책성과를 계량적·비계량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리과제에 대하여 '특정평가 기여도(가감점)' 부문 평정

### ② 하반기 자체평가

- ㉢ (실적보고회) 국별 평가지원팀이 취합한 실적 보고서를 소위원회 평가위원들에게 보고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이해도를 제고한 후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점검
- ㉣ (소위평가) 소위원회 소관 관리과제에 대해 평가요소 충족 여부를 확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점수 및 순위를 산출
  - 정성지표는 강제배분법\*에 따라 등급비율에 맞게 평정
  - \* 예) 소위 소관 과제가 8개인 경우 S(20%) 2, A(30%) 2, B(40%) 3, C(10%) 1개 부여
  - 사전평가 결과인 특정평가 기여도 가감점을 반영
  - ※ 사전평가(①-㉣) 결과를 참고하여 소위 평가 진행
- ㉤ (이의신청처리) 평가지원팀은 과제 소관부서에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대상 : 위원의 판단 착오 또는 배점오류 발생한 경우로 이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㉔ (조정위평가) 소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소위원장 3명)가 기관 전체의 등급(1~7등급)배분을 고려하여 최종 등급결정
- 소위간 점수 격차를 보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안)을 부여 후, 최우수/최하위 과제 및 등급 경계 과제 중심 검토(가감점 부여 등)

※ 이때 소위에서 평가한 과제의 순위를 변경할 수는 없음

$$* \text{조정점수} : \text{과제 전체평균} + \text{전체표준편차} \times \frac{\text{과제 원점수} - \text{해당소위 평균}}{\text{해당소위 표준편차}}$$

- 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평정의견을 반영,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정책제언 방식으로 의견 작성

- ㉖ (전체위원회 의결) 평가결과 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한 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의결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 자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환류

- 자체평가 결과를 부서 및 개인 평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
  -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과장급 이상 성과계약서 성과지표 및 업무실적평가 부서지표에 활용하여 연계 강화
- 성과급 지급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
  - (고위공무원·과장급) 자체평가결과가 성과급에 35% 반영
  - (4.5급 이하) 자체평가결과가 성과급에 25% 반영

### □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반영 방법

- 정부업무평가 대응을 위해 '24년 개인정보위 성과평가 기본계획상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소통', '규제', '적극행정' 등 관련지표 설정
- 각 조직평가항목 결과는 개인 성과평가지 비중 있게(50%이상) 반영하여 개인의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될 예정

<참고 : '23년 개인성과평가 체계>

개인성과평가	공무원	조직성과(70%)	개인실적(15%)	직무수행(15%)	건강한 조직문화 (-2.5~+0.9점)
	과장급	조직성과(70%)	개인실적(15%)	직무수행(15%)	건강한 조직문화 (-21~+0.8)
	복수직 4급	조직성과(50%)	개인실적(30%)		직무수행능력(20%)
	5급이하 <성과급>	조직성과(50%)	개인실적평가(50%)		

## □ 분야별 환류

### ○ 조직개편분야 환류

- 자체평가위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 내 조직 보강·개편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 시 참고
-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직관리계획,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반영
- ※ 특히 평가결과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파악된 부서는 자체 분석하여 필요 시 인력조정·재배치 및 부서기능 재조정

### ○ 예산조정분야 환류

- 미흡사업에 대해 주요 미흡사유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또는 성과관리 개선대책 수립
- (집행부진) 예산삭감 등 지출구조조정 원칙, 성과관리개선대책도 제출
- (성과저조) 성과관리개선대책 제출, 전년도 미흡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 ○ 정책개선분야 환류

- 소관 부서에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의견을 안내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정책에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화
- 자체평가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환류
- 자체평가 결과는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 지적사항 반영상황을 주기적 점검

### ○ 인사분야 환류

-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 고위공무원의 경우 성과목표 단위 주요과제는 성과계약 체결, 과제 평가결과는 개인 평가에 직접 반영
- 과장급 이하는 부서 평가과제로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 부여
- 개인 성과평가 결과는 인사 평정과 성과급 지급 시 반영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3	3	0 (%)	0 (%)	2 (66.7%)	1 (33.3%)	3 (100%)
성과목표	18	18	0 (%)	0 (%)	16 (88.9%)	2 (11.1%)	14 (77.8%)
관리과제	68	68	1 (1.5%)	3 (4.4%)	59 (86.8%)	5 (7.3%)	52 (76.4%)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달성률	○ 당해연도 법·제도 개선 건수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상 당해연도 법·제도 개선 과제 수 × 100%	100%	정량	산출	
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① 개인정보 실태점검 이행률	○ (점검완료 사업자 수 / 점검계획 사업자수) × 100%	100%	정량	산출	
3.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국민 인식도	○ 총점수합계 / 응답자 수 × 100%	95%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b>						
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정합성 제고	○ 정합성 검토수 / 목표 검토수(28건) * 100%	100%	정량	산출	
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①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 보호·활용체계 구축	○ 규제 샌드박스 처리율(50%) : 실적/목표(기한 내 처리율 95%)×100% ○ 개인정보보호 기술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인프라 구축(50%) : 실적/목표(R&D 단계평가 1회, 우수기술 지원 3건)×100%				
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	① 가명정보 활용체계 혁신	○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추진율(50%) : 정상추진 /목표(5건)×100% ○ 제도 개선(50%) :실적/목표(2건)×100%	100%	정량	산출	
	②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조성	○ 전송지원 플랫폼 1차 구축완료(100%)	100%	정성	산출	
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	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반 마련	○ 자율보호 제도 개선 실적 /목표(3건) × 40% ○ 자율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목표(2건) × 40% ○ 협업을 통한 교육 및 문화 확산 실적/목표(3건)× 20%	100%	정량· 정성	산출	
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	①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기준 마련	○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AI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3건	정량	산출	
<b>II.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b>						
1.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① 체계화된 조사 기반 마련 및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점검·조사 강화	○ [보호법 시행령 개정, 조 사업무 매뉴얼 마련 등 제 도 개선(2개) × 50%] + [집중관리시스템 등 공공 기관 점검·조사(55개)× 50%]	100%	정량· 정성	산출	
2.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분 수용률	○ '24년 처분에 대한 처분 수용 건수 / '24년 총 처분 건수 × 100%	95.3%	정량	산출	
3.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	① 사고 조사 및 처리실태 점검 이행률	○ 유출·침해사고 조사·처분 실적/목표(70건)×70% ○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실적/목표(2건)×30%	90%	정량	산출	
4.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① 법령 제개정안의 침해요인평가 내실화	○ 소관부처 수용 법령 수/ 개선권고 법령 수 × 100%	83%	정량	산출	
5.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① 분쟁조정 성립률	○ (조정안에 대한 성립 건수 / 분쟁조정위의 조정 안 결정건수) *100	43.8%	정량	결과	
6.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	① 온라인플랫폼 등 신기술 분야 제도개선(안) 마련	○ 실적/목표(온라인플랫폼 등 신기술 분야 제도개선(안) 마련 건수(2건)) × 100%	1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Ⅲ.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b>						
1.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	① 개인정보위 주요업무 과제별 이행률	○ 이행과제/실행계획 × 100%	100%	정량	산출	
2.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① 위원회 운영	○ 개최실적/목표(20회) × 100%	100%	정량	산출	
	② 직장 만족도	○ 직장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로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70점	정성	결과	
3.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보도 성과	○ (방송x3점 + 지면x2점 + 기타 통신·인터넷x1점) / 총 보도자료 배포건수	14.8점	정량	산출	
	② SNS KPI 성과	○ 당해 (유튜브) 구독자 증가, 총 조회수 + (페이스북) 팔로워 증가, 콘텐츠 도달수 + (블로그) 순방문자수, 조회수	1,138,295점	정량	산출	
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	①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 대외 개인정보 정책·처분사례 발표* 및 유관기관 면담** 횟수  * 기관장(장·차관급)의 GPA, APPA, APEC CBPR 등 주요 국제협의체의 발표(대면, 화상, 전화 포함) ** 기관장(장·차관급)의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기구, 유관기관 등과의 면담(대면, 화상, 전화 포함)	8건	정량	산출	

####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b>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b>							
<b>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b>							
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①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개정 노력	○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선 - 보호법 개정 대내외 수요조사(30%) - 보호법 개정 추진과제 수립(40%) ○ 가이드라인 등 정비 - 개정 건수 / 목표건수 (15종) × 20% - 제·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수 / 목표횟수(2회) × 10%	100%	정량·정성	과정	
		② 개인정보 처리제도 개선	○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 -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50%) -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 도출(50%)	100%	정성	산출	
		③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노력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공고화 - 연차보고서 제작(30%) -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 개정(30%) - 시행계획 수립(40%)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①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강화 - 잇힐권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20%)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제도개선 계획 수립(50%) ○ 지원사업 성과(30%) - 실제 처리건수 / 목표건수(13,500) × 25% - 연말 기준 처리율 90% 이상 달성 여부(5%)	100%	정량· 정성	산출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장 방안 마련 - 시행령 개정(40%) - 자동화된 결정 안내서 공개(30%) - 자동화된 결정 고시 제정(30%)	100%	정량	산출	
		③ 입법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입법 과정의 개인정보 정합성 제고 - 법률 자문 및 의견 청취(30%) - 연구용역 결과도출(30%)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토 업무 운영·심사 기준(안)' 마련(40%)	100%	정성	산출	
<b>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b>							
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활용 지원		①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 해소	○ 생체인식정보 합리적 규율체계(안) 마련	100%	정량	산출	
		②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제도개선	○ 개인영상정보 법안 국회 제출(50%)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마련(50%)	100%	정성	산출	
②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		① 인터넷망 분리 개선방안 도출 및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개정	○ 인터넷망 분리 제도개선 방안 도출 (50%)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해설서 발간(50%)	100%	정량	산출	
		② 개인정보 수집 기기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인증기준 세부내용 보완 및 인증절차서 마련 등 PbD 인증 항목 개선	100%	정량	산출	
<b>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b>							
①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강화		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	○ 지역 센터별(강원, 부산, 대전) 운영성과 평가 실시 여부	3개소	정량	산출	
		② 가명정보 교육과정 및 컨설팅 운영	○ 교육 : 실적/목표(24회) × 100% ○ 컨설팅 : 실적 /목표(22회)× 100%	100%	정량	산출	
②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합성데이터 생성 및 참조모델 공개	○ 합성데이터 생성(50%): 실적/목표(5종) ×100% ○ 참조모델 마련(50%)	100%	정성	산출	
		②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운영(70%): 개소실적 /목표(2개소)×100% ○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추가 선정(30%): 정상추진 / 목표(1개소)×100%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① 전분야 마이데이터 법제도 마련	○ 하위법령 개정 × 80% - 하위법령(안) 마련(25%) - 하위법령(안)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수렴(40%) - 하위법령(안) 규제 및 법제처 심사(25%) - 하위법령(안) 국무회의 통과(10%) ○ 실적/목표(마이데이터 안내서, 가이드라인(안) 마련 3종) × 20%	100%	정성	산출	
		② 국민, 기업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발굴 및 마이데이터 표준화 개발 추진	○ 실적/목표(마이데이터 표준API 개발수, 15개) × 50% ○ 실적/목표(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발굴·추진, 5개) × 50%	100%	정량	산출	
<b>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b>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기획·운영(70%)	○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30%) ○ 보호수준평가 현지실사 100개 기관 이상 실시(70%)	100%	정량· 정성	산출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30%)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5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50%)	100%	정량	산출	
②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운영(30%)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기관·기업 수(50%) : 실적/목표(45개사)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원 컨설팅(30%) : 실적/목표(60개사)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시 제정 및 작성지침 개정(20%)	100%	정량· 정성	산출	
		② 자율규제 활성화 노력(30%)	○ CPO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및 고시·가이드라인 마련) × 50% ○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점검 실시기관 수 / 계획기관 수(35개사)) × 50%	100%	정량· 정성	산출	
		③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교육 및 문화 확산(40%)	○ (실무역량 교육 실시 횟수/50회)×30% +(정보주체 현장교육 실시횟수/170회)×30% ○ 개인정보 보호주간 참여 민간기업 수 / 20개사) × 40%	100%	정량	투입	
<b>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b>							
① AI·데이터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혁신지원제도 활용		① AI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법령해석 실적	○ 처리/접수 ×100%	100%	정량	산출	
		②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실적	○ 회의 개최 횟수	2회	정량	과정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AI 국제규범 논의 선도 및 국내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① AI 규범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 노력도	○ 고위급 실무급 국제행사·회의·면담 등 개최·주재·참석 횟수 ○ 국제기구 보고서·결의문 등에 의견 제시·참여 횟수	8회	정량	산출	
<b>II.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b>							
<b>1.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b>							
	①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기반 강화	①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제도 개선 노력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60%)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업무 매뉴얼마련(40%)	100%	정량	산출	
	②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노력도	○ 집중관리시스템 실태점검(50개) + 통계 등 개인정보 처리기관 실태점검(5개)	55개	정량	산출	
<b>2.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b>							
	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처분	① 총 조사·처분 중 주요 사건 조사·처분 비중	○ '24년 주요사건 처분건수 / '24년 총 처분 건수 × 100%	30%	정량	산출	
	② 새로운 유형의 개인 정보 침해 대응 준비	① AI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 '24년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수/실태점검 목표(12개) 사업자수×100	100%	정량	산출	
		② 스마트카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 '24년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수/실태점검 목표(3개) 사업자수×100	100%	정량	산출	
		③ 해외직구 분야 조사·실태점검 완료	○ '24년 조사 또는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수/실태점검 목표(4개) 사업자수×100	100%	정량	산출	
<b>3.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b>							
	①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 심의·의결 건수	○ 금년도 위원회 심의·의결건수	70건	정량	산출	
	② 주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① 주요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완료여부	○ 분야별 조사·실태점검 완료 여부	2건	정량	산출	
<b>4.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b>							
	① 국제·산업 등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개선	① 현행법령에 대한 개선권고의 이행실적	○ 개선권고 법령 수 / 개선권고 발굴 법령 수 × 100%	100%	정량	산출	
	② 침해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 입법지원	① 법령 제개정안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 준수율(%)	○ 기한 내 처리건수 / 전체 처리건수 × 100%	80%	정량	산출	
<b>5.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b>							
	①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이용 지속 확대	① 분쟁조정제도 개선노력	○ 운영세칙 개정(30%) ○ 분쟁위 상정 학계·산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30%) ○ 분쟁조정제도 홍보 - 공공기관 등 현장 소통 진행(20%) - '개인정보처리자 유출통지 표준양식' 개정(20%)	100%	정량·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개정	○ 안내서 개정 횟수	1회	정량	산출		
<b>6.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b>								
	①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 조성	①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확산	○ 클라우드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처리 보호조치 항목 도출 완료 여부	100%	정량	산출		
		② 사전적정성 검토제 적기처리율	○ 접수 후 60일 이내 적용방안 마련 건수 / 전체 접수 건수 (철화반려 건수 제외) × 100%	80%	정량	산출		
	② 온라인플랫폼의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	③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선제적 실태점검 이행율	○ 실태점검 완료 사업자 수 / 실태점검 계획 사업자 수 × 100%	100%	정량	산출		
<b>Ⅲ.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b>								
<b>1.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b>								
	①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기능 강화	① 지시사항 정상 추진율	○ 정상추진 및 완료 건수 / 지시사항 건수 × 100%	100%	정량	산출		
		② 재정신속집행률	○ 상반기 예산집행액 / 예산현액 × 100%	80%	정량	산출		
	②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의 차질없는 이행	① 정부혁신 실행 과제 정상 추진율(40%)	○ 정상추진 과제수/혁신과제수 × 100%	100%	정량	산출		
		② 국정과제 이행계획 실행률(40%)	○ 국정과제 이행실적 /국정과제 이행계획 × 100%	95%	정량	산출		
		③ 2030 자문단 정책제언(20%)	○ 자문단 정책제언 수 /목표 수(10건)× 100%	100%	정량	산출		
	③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① 규제정비계획 이행률	○ '24년 규제정비건수 / 목표건수(9건)×100%	100%	정량	산출		
		②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달성률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건수/목표건수 (7건)×100%	100%	정량	산출		
	④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① 정보화사업 관리 기능 구현 및 활용률	○ (활용 기능 건수/구현 기능 건수) × 100%	100%	정량	산출		
		②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율	○ (조치 취약점 건수 /발견 취약점 건수) × 100%	100%	정량	산출		
	<b>2.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총괄 지원기능을 강화한다.</b>							
	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 지원	① 개인정보 법령해석 처리(30%)	○ 법령해석 목표 달성율(실적건수 / 목표건수(323건) × 100%)	100%	정량	산출		
		②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제고(10%)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만족도 점수	68%	정성	결과		
③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30%)		○ 발간실적 / 발간목표(2건)× 100%	100%	정량	산출			
④ 법령해석 연구반 운영(30%)		○ 운영실적 / 운영목표(주1회)× ×100%	100%	정량	과정			
②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강화	① 위원회 운영	○ (위원 만족도 점수 평균/100)×100%	100%	정성	결과			
	② 위원회 운영 개선	○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건수	5건	정량	산출			
③ 함께 일하고 싶은, 일 잘하는 위원회	① 전문직위 전문관 보임률(20%)	○ 전문직위 내 전문관 실제지정 명수	10명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조직 문화 구현	② 계획인사교류 직위 신설(20%)	○ 계획인사교류 직위 개수	2개	정량	산출	
		③ 간부급 유연근무 이용 평균비율(20%)	○ 12월 31일 기준 총현원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비율 (월평균 1회 이상)	72%	정량	산출	
		④ 직장 만족도 (30%)	○ 직장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로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70점	정성	결과	
		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10%)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가자 모집인원	6명	정량	산출	
	④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① 민원처리 만족도	○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 만족도	62.6%	정성	결과	
		② 정보목록 공개율	○ (정보목록 공개건수 / 생산문서 건수)×100	78%	정량	산출	
<b>3.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언론 및 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체계적 소통 강화	① 언론 소통실적	○ 방송출연 + 인터뷰 + 기고 + 브리핑 + 언론간담회 건수	35건	정량	산출	
		② 현장 소통실적	○ 정책현장설명회 + 전문가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강연회 + 포럼 + 세미나 횟수	80건	정량	산출	
	② 정책수요자 공감 유도·협업형 디지털 소통 강화	① SNS 쌍방향 소통실적	○ 소극적 반응 (유튜브· 페이스북 좋아요, 블로그 공감) + 적극적 반응 (유튜브·페이스북 ·블로그댓글) 지수	13,412점	정량	산출	
		② 정책 홍보 디지털 소통 실적	○ 기관장(부기관장) 출연 동영상 제작 및 SNS 게재 횟수 + 이미지 콘텐츠 (카드뉴스 등) 제작 및 SNS 게재 횟수	62건	정량	산출	
<b>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b>							
	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	①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 기관간 MOU 체결 건수 및 양다자 협력사업 발굴 또는 수행 건수	3건	정량	산출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	① 국외이전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제도개선 의견 수렴 (서면 3점/회, 현장 간담회 9점/회) ○ 연구반 운영 : 4점/회 ○ 제도개선 과제 발굴: 6점/개 ○ 제도개선안 마련 : 15점/개	90점	정량	산출	
		②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	○ 동등성 검토 추진계획 전체회의 보고(20%) ○ 한-EU 회의 개최(10%) ○ 검토의견 작성(30%) ○ 전문위원회 평가(20%) ○ 전체회의 의결(20%)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b>I.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b>		
<b>1.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b>		
	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국정 11-4, 업무 1-3
	②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4-2
<b>2.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한다.</b>		
	①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한 활용 지원	국정 11-4, 업무 1-2, 4-1, 5-1, 5-2
	②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의 실효적 보호 강화	국정 11-4, 업무 4-1, 5-2
<b>3. 가명정보·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혁신한다.</b>		
	①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강화	국정 11-4, 업무 5-1, 5-3
	②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1-2, 5-1
	③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	국정 11-3, 업무 2-1, 2-2
<b>4.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한다.</b>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국정 11-4, 업무 3-3
	② 민간 자율보호 역량 강화	국정 11-4, 업무 4-1, 4-2, 5-3
<b>5. 원칙 중심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규율체계를 민·관이 공동으로 설계한다.</b>		
	① AI·데이터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혁신지원제도 활용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1-1, 1-3
	② AI 국제규범 논의 선도 및 국내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업무 6-1
<b>II.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b>		
<b>1.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규제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b>		
	① 개인정보 조사체계 정비 및 조사기반 강화	국정 11-4, 업무 3-2
	②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3-3
<b>2.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한다.</b>		
	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조사·처분	국정 11-4, 업무 3-1
	②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준비	국정 11-4, 업무 3-1
<b>3.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대응한다.</b>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① 주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조사·대응	국정 11-4, 업무 3-1
	② 주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국정 11-4, 업무 3-1
<b>4. 법령의 침해요인 평가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b>		
	① 국세·산업 등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개선	국정 11-4, 업무 3-3
	② 침해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적 입법지원	국정 11-4
<b>5. 사후구제를 내실화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b>		
	① 분쟁조정 제도개선 및 이용 지속 확대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4-3
	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국정 11-4, 업무 4-3
<b>6.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환경을 조성한다.</b>		
	① 온라인플랫폼 등 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반 조성 <b>[핵심 민생과제]</b>	국정 11-4, 업무 1-1, 3-1
	② 온라인플랫폼의 선제적 실태점검 추진	국정 11-4, 업무 3-1
<b>Ⅲ.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한다.</b>		
<b>1. 정책기획 및 규제개혁을 강화하여 기관혁신을 추진한다.</b>		
	①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기능 강화	
	② 국정과제와 정부혁신의 차질없는 이행	국정 11-3, 11-4
	③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④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제공	
<b>2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b>		
	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해석 지원	
	② 적극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강화	
	③ 함께 일하고 싶은, 일 잘하는 위원회 조직 문화 구현	
	④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b>3.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도 및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b>		
	① 언론 및 정책 현장과의 전략적·체계적 소통 강화	
	② 정책수요자 공감 유도·협업형 디지털 소통 강화	
<b>4.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주도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한다.</b>		
	①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리더십 강화	국정 11-4, 업무 6-1, 6-3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	국정 11-4, 업무 6-2